

국제감축사업 참여자를 위한

파리협정 제6조 해설 및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CONTENTS |

1. 파리협정 제6조 해설 및 감축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개요	001
1.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 및 목적	002
2.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003
2.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004
1. 파리협정 제6조 추진 배경	005
2.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	009
1) 6조 1항 협력적 접근법의 개념	009
2) 6조 2~3항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	011
3) 6조 4~7항 6.4조 메커니즘	014
4) 6조 8~9항 기타 협력적 접근법	017
3.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및 주요 내용	018
3.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감축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023
1.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	024
2.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 추진절차	029
3. 6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사항	054
4. 사업 유형별 필요 양식	057
1. 파리협정 제6.2조	058
2. 파리협정 제6.4조	064
5. 부 록	069

약어표

구분	풀이	정의
A6.4ER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파리협정 제6.4조 감축실적
AEF	Agreed Electronic Format	합의된 전자적 양식
BAU	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격년 투명성 보고서
CARP	Centralized accounting and reporting platform	중앙산정 및 보고 플랫폼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COP	Conference of Partie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국가승인기구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지정운영기구
EB	Executive Board	CDM 집행이사회
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
GST	Global Stocktake	전 지구적 이행점검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
LDC	Least Developed Country	최빈개도국
LT-LEDS	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구분	풀이	정의
LOA	Letter of Authorization	허가서
LOI	Letter of Intent	의향서
MO	Mitigation Outcome	감축성과물
MPGs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방식·절차·지침
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측정·보고·검증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NIR	Nationally Inventory Report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MGE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
PA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감축실적 발행 메커니즘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사업계획서
PIN	Project Idea Note	사업개발문서
POA	Programme of Activities	프로그램형 사업 (여러 소규모 사업을 묶는 CDM·6.4조 사업 구조)
QA/QC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품질보증/품질관리
RMP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규칙·방식·절차 (파리협정 제6.4조 세부운영지침)
SB	Supervisory Body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SBSTA	Superviso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군소도서개발국
SOP	Share of Proceeds	적응기금을 위한 분담금
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술집행위원회
TER	Technical Expert Review	기술전문가 검토
VCM	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탄소시장
VVB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y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기관

CHAPTER

1

파리협정 제6조 해설 및 감축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개요

01.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 및 목적

02.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01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 및 목적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및 기타 감축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파리협정 제6조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이 조항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축 활동과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감축실적 거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감축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외감축' 부문의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 이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감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조 메커니즘은 기술적, 제도적 요건이 복잡하며 감축실적의 이전 및 상계 과정에서 이중계상 방지, 투명성 확보, 호스트국 승인 등 다양한 절차적 요구사항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점은 사업자 입장에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은 파리협정 제6조의 개념, 적용 메커니즘, 국제 기준을 해설하고, 실제로 국제감축사업을 기획·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및 공공사업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단계별 수행 절차, 고려사항, 참고 서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기업, 공공기관, 개발협력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착수와 실행 과정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2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본 가이드라인은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국제감축사업 추진의 각 단계별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1장 '파리협정 제6조 해설 및 감축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개요', 2장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3장 '파리협정 6조 기반 감축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4장 '사업 유형별 필요 양식', 5장 '부록'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2장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에서는 파리협정 6조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과 6.2조, 6.4조 채택 연혁 및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어, 파리협정 6조의 개념과 기본 원칙 등 사업을 추진 하기에 앞서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3장에서는 파리협정 6조 하 국제감축사업의 초기 타당성평가부터 유치국 승인, 파리협정 6.2조 또는 6.4조 사업 등록, 감축실적의 생성 및 이전, 상계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4장과 5장에서는 사업 추진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양식과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제감축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ODA 수행기관 등에서도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본 가이드라인은 파리협정 6조 결정문 및 부속서, UNFCCC SB 결정사항, 국내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 부문 사업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HAPTER

2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 01. 파리협정 6조 추진 배경
- 02.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
- 03.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및
주요내용



01 파리협정 6조 추진 배경

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란?

파리협정의 채택 배경과 의의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21)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간의 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요 선진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의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특히 하부 조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는 선진국 중심의 차별화된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이행 체제로,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 부담 거부와 개도국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을 막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3%를 감축해야 합니다.

<표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간 차이점 비교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지, 1.5℃ 상승 억제 노력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온실가스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주로 선진국	감축 의무국가	모든 당사국
하향식	목표 설정방식	상향식
기준연도 배출량 및 국별 여건 고려	목표 설정기준	진전원칙 (다음 NDC는 현재 NDC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비징벌적
국가 중심	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파리협정의 구조

파리협정은 서문(preamble)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하게 된 근거와 이행 원칙,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등이 명시되어 있고, 본 조항은 목표(제2조)와 더불어 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요소인 제3~15조, 법적·행정적 사항인 제16~2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감축(제4조), 적응(제7조), 기후재원(제9조), 기술개발 및 이전(제10조), 역량배양(제11조), 투명성체계(제13조)를 6대 핵심 조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조항으로는 산림흡수원(제5조)과 협정 이행을 위해 시장 또는 비시장 접근법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제6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관련 조항(제8조)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별 국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협정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전 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을 통해 파리협정의 목표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 2> 파리협정 조항별 내용

조항 번호	내용	조항 번호	내용
제1조	용어의 정의	제16조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제2조	목표 및 원칙	제17조	사무국
제3조	국가결정기여(NDC)	제18조	부속기구
제4조	감축	제19조	관련 기구 및 제도적 장치
제5조	흡수원	제20조	서명, 지역경제연합, 비준·수락·승인·가입
제6조	국가 간 협력 (시장/비시장 접근법)	제21조	발효
제7조	적응	제22조	개정
제8조	손실과 피해	제23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제9조	기후 재원	제24조	분쟁 해결
제10조	기술 개발 및 이전	제25조	투표권
제11조	개도국 역량배양	제26조	수탁자
제12조	교육·훈련·대중인식 제고· 대중 참여 등	제27조	유보
제13조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	제28조	탈퇴
제14조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제29조	정본
제15조	이행·준수		

나 파리협정 제6조

파리협정 제6조 추진배경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청정개발체제(CDM)나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ETS) 등 다양한 세부 이행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선진국의 감축 의무 이행을 촉진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참여로 인하여 전 세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은 체계 밖에 있었습니다. 개도국은 감축 책임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의 실질적인 감축 기여도가 평가되지 않아 교토의정서 체제의 전지구적 감축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CDM 등을 통해 생성된 감축실적의 추가성 검증과 검증 절차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중계상, 누출, 추가성 논란 등은 감축실적의 환경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이는 감축사업의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CDM 및 JI 사업은 복잡한 등록·검증·인증과정을 요구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감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되는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개도국의 실질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거나, 경제·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형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체계인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개발 수준과 기술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감축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감축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졌고, 파리협정 6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용어정리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감축 의무가 없는 선진국이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감축사업을 추진, 발생한 감축실적을 자국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체제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Annex I 국가)들끼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크레딧을 공동 분배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cap)을 할당한 후, 동 총량을 초과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미달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파리협정 6조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감축비용을 줄이고 감축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개발도상국의 기술·재정 문제를 보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협력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 비시장 기반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파리협정 6조는 특정 국가에서 감축활동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다른 나라가 구매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사업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6조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 2항(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양자·다자 협력사업, 배출권거래제 시장 연계 등)에 따라 운영되는 상향식의 분권화된 제도입니다. 참여국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이중계상(Double counting) 방지를 위한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제6조 4항(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하의 CDM과 유사하게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CMA)에서 지정한 감독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화된 감축 메커니즘으로, UNFCCC 감독기구가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감축실적을 발행·관리합니다. 발행된 감축실적의 일부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적응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제6조 8항(비시장 접근법)은 감축실적의 거래 없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감축·적응 조치 강화, 금융, 기술이전, 역량강화 지원 등 시장 기반 메커니즘 외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교토의정서 체제 하 메커니즘 대비 참여국을 확대하고 제도적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많은 발전을 보인 체계입니다. 또한, 감축사업이 단순히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넘어, 사업 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 6조 1항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의 개념

파리협정 6조 1항

1.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1. 당사국은 일부 당사국이 감축 및 적응 행동에 대한 의욕을 상향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 건전성 촉진을 위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있어 자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파리협정 제6조 1항은 제6조의 활용이 개별 당사국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자 하는 국가는 국내적 노력만으로 달성하려는 NDC 목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는 NDC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파리협정 제4조 2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개별 당사국은 자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국가결정기여를 마련하고, 이를 제출하며,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기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감축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파리협정 제4조 2항은 개별 국가의 NDC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 조치를 추진할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즉,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우선해야 하고, 이보다 더 많은 감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조 1항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할 때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토메커니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탄소시장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사항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건전성에 대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서의 환경건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감축 결과물을 거래하고 난 후의 배출량 총합이 거래 당사자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총합보다 동일하거나 더 낮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한국의 환경건전성 기준(안)



용어정리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협정 제6조와 같은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제6조 활용 후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용 전의 배출량보다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의미(ITMO 이전량 $\geq$ ITMO 사용량)

나 6조 2~3항 협력적 접근법

파리협정 6조 2항

2.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2. NDC 달성에 있어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물(ITMO)의 사용과 연관된 협력적 접근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사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를 포함한 환경건전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고, 파리협정 당사국회의가 채택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이중계상 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산정을 적용해야 한다.

파리협정 제6조 2항은 다른 국가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감축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환경적인 무결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회계 조정을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즉, 국가 간 탄소거래를 NDC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중계상과 형식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6조 2항에서는 NDC 이행 및 달성 목적으로 국가 간 거래한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축실적'은 새로운 기술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거나, 온실가스 흡수원인 나무를 심는 등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감축량을 산정하여 특정 단위의 실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량을 대체할 경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6조 2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중계상(Double Counting)을 방지하여 제6조 활용의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중계상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결과물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 번 이상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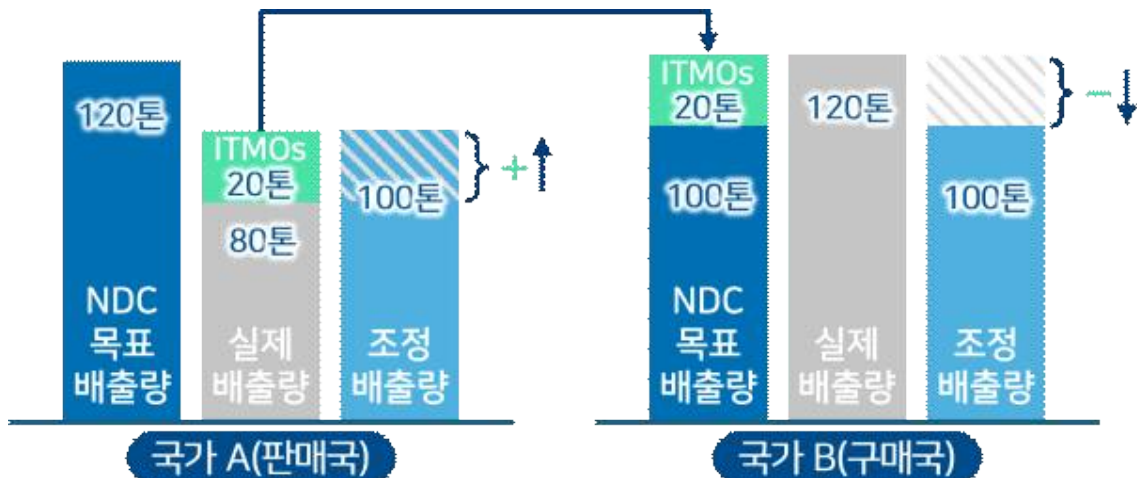
기존 CDM 사업에서 발행된 감축실적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국가(개도국)에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축의무 달성에 사용하기 위해 실적을 구매한 선진국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NDC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보고와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매국과 구매국 모두 거래한 ITMO를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중계상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6조 활용에 따른 ITMO 거래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파리협정 6조에는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이라는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상응'한다는 것은 판매국과 구매국 모두 거래한 ITMO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국은 판매한 ITMO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국의 NDC 산정 시 더해주고, 구매국은 감축실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차감하여 양 국가의 거래량을 상계하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전 지구적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1] 상응조정을 통한 이중계상 방지



용어정리

투명성(Transparency):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감축 및 적응 행동, 기후재원·기술·역량 배양 관련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파리협정 제6.2조에 의거하여 국가 간에 이전되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 단위. 온실가스 지표인 이산화탄소 환산량(tCO₂eq)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등 합의된 비온실가스 지표를 포함하며, 이중 계산 방지를 위한 '상응 조정'이 완료된 실적을 의미함

파리협정 6조 3항

3.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voluntary** and **authorized by participating Parties**.

3. 파리협정 하 NDC 달성을 위한 ITMO의 사용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참여 당사국의 허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파리협정 제6조 3항은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모든 감축실적의 이전은 참여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허가 하에서만 NDC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교토메커니즘 하의 주요 이행수단인 JI와 CDM은 참여국의 승인(Approval)을 필요로 하지만, 협력적 접근법은 참여국의 허가(Authorization)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교토메커니즘보다 참여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NDC 설정과 이행, 달성은 개별 당사국 정부의 책임 하에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므로, 국가 간 거래되는 ITMO에 대해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가 이를 반드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 6조 4~7항 6.4조 메커니즘(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파리협정 6조 4항

4.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for use by Parties on a **voluntary basis**. It shall be supervised by a body designa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shall aim:

- (a) To promote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b) To incentivize and facilitate participation in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uthorized by a Party;
- (c)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mission levels in the host Party, which will benefit from mitigation activities resulting in emission reductions that can also be used by another Party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 (d) To deliver an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4.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당사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권한과 지침 하에 설립된다. CMA에서 지정한 기관에 의해 감독되며, 메커니즘은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운영된다.

-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증진할 것
- (b) 당사국의 권한 하에 공공과 민간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촉진
- (c) 유치국의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다른 당사국이 NDC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이 존재할 것
- (d)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반적인 감축에 기여할 것

파리협정 제6조 4항은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즉, 6.4조 메커니즘의 목표와 설립의 근거를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시장은 개별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CMA에서 채택한 지침에 따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파리협정 6.4조 지침은 제6조 4항의 운영을 위한 규칙·방식·절차를 필요로 하며, 운영구조가 CMA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집권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6조 4항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 사업의 등록과 승인이 감독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된 사업은 유효기간 동안 감독기구에 의해 관리됩니다. 또한, 감축 활동에 따른 감축실적을 인정하고 배출권의 형태로 유닛을 발행하는 역할이 감독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위 조항은 제6조 4항 메커니즘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증진한다는 것은 추진하려는 사업이 사업 유치국의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당사국 권한 하에 공공과 민간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는 조항은 제6조 4항 메커니즘의 활동 주체를 언급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장애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거나, 긍정적 요인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치국의 배출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다른 당사국이 NDC에 감축실적을 사용할 경우에도 유치국에 편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유치국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반적인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정리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OMGE):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

파리협정 6조 5항, 6항 및 7항

5. Emission reductions resulting from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used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the host Party'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f used by another Party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5. 제6조 4항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다른 당사국이 NDC 달성에 이용한 경우에, 사업 유치국의 NDC 달성 증명에 이용할 수 없다.

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ensure that a **share of the proceeds** from activities unde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used to cover administrative expenses as well a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meet the costs of adaptation.

6.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는 제6.4조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적응비용의 충당과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함을 보장한다.

7.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adopt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t its first session.

7.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제1차 회의에서 제6조 4항에 명시된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규칙, 방식, 절차를 채택한다.

파리협정 제6조 5항은 시장 원칙 중 하나인 이중계상 방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축실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사업 유치국과 참여국이 감축 실적을 배분하므로, 사업 유치국에서는 배분 비율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전한 감축 실적은 자국의 NDC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이 실적은 상응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제6조 6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비용과 6.4조 메커니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조달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CDM에서도 개도국의 적응기금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CER을 발행할 때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제6조 7항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제6조 4항 메커니즘이 설립, 운영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 4항에 따라 감독기구(Supervisory Body)에서 메커니즘을 관리하지만, 감독기구 상위에서 메커니즘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합니다. 또한, 당사국총회에서 규칙, 방식,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6조 4항에 대한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방식, 절차 지침의 개발이 논의되었습니다.

라 6조 8~9항 기타 협력적 접근법

파리협정 6조 8항 및 9항

8.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holistic and balanced **non-market approaches** being available to Partie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n a coordinated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inter alia,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s appropriate. These approaches shall aim to:

- (a) Promo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bition;
- (b) Enhanc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 (c) Enable opportunities for coordination across instruments and releva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8.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특히 감축·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율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NDC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활용 가능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균형적인 비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가. 감축 및 적응 의욕 촉진

나. 국가별 기여방안(NDC) 이행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 강화,

다. 여러 기제 및 관련 제도적 장치 전반에서 조정의 기회를 마련

9. A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defined to promote the non-market approach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this Article.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시장 접근법 프레임워크를 제6조 8항에 언급된 비시장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한다.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다른 용어들처럼 비시장 접근법 또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비시장 접근법은 협력적 접근법과 달리 국가 간 협력은 하지만,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지원의 대가로 감축 실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UNFCCC 체제의 전통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과 같이 선진국이 개도국의 NDC 이행 및 달성을 지원하되, 개도국으로부터 ITMO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시장 접근법과 관련하여서는 NDC 이행을 위해 다른 당사국에 재원·기술 이전·역량배양 등을 지원한 우수사례와 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를 통해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을 비시장 접근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협력적 방식(제6.2조)와 UNFCCC가 운영하는 파리협정 크레디팅 메커니즘(제6.4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체계 모두 신뢰성 있는 감축실적의 생성·이전·보고를 위해 명확한 운영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제6조의 채택 및 발전 과정은 파리협정이 채택된 COP21 이후, COP26, 27, 28, 2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회의에서의 주요 결정과 논의는 협력적 접근법의 이행을 구체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ITMOs 사용범위, 상응조정 방식, 보고·검토 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6.2조의 기본 지침은 COP26에서 마련되었습니다. COP27과 28에서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COP29에서는 ITMOs 생성·이전·취소를 관리하는 등록부 연동과 보고·검토 절차의 명확화 등 실제 거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6.4조는 COP26에서 규칙·방식·절차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사업 등록과 검증·발급을 위한 세부 규정은 후속 협상에서 보완되었습니다. COP27과 28에서는 방법론의 승인 절차와 평가 기준, 방법론 개발 원칙, 지속가능발전 기여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졌으며, COP29에서는 사업 등록·승인 절차, 6.4ER 발급 기준, 상응 조정 적용 방식 등 핵심 운영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준비할 제출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림 2]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COP 21 파리협정 채택 ('15)	COP26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21)	COP27 추가 이행규칙 채택 ('22)	COP29 추가 지침 완성 ('24)
Article 6.2 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	지침(Guidance) 채택 - ITMOs 사용·이전 - 참여국 요건 - 협력적 접근법 방법 - 보고 및 검토 - ITMOs 기록·추적을 위한 인프라	세부 이행지침 논의 -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협력 인정 - 발행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 반영 - ITMOs 범위, 사업 범위, 승인 등 - 상응조정의 적용 - 중앙산정 및 보고 플랫폼 운영	추가 지침 논의 및 합의 - 승인 절차 및 변경, 양식, 내용 등 - 최초이전(First Transfer) 적용 - ITMOs 보고 양식 및 추가 요소 - 보고된 정보의 불일치 및 연속성 검토 - 레지스트리의 기능
Article 6.4 6.4조 메커니즘 (The Mechanism)	규칙·방식·절차(RMP) 채택 - 감독기구(SB)의 역할 - 유치국 요건 - 활동 주기 6.4 메커니즘 등록부 - 수수료(SOP&OMGE)	세부 이행지침 논의 - 감축실적 발행 체계, 절차, 기준 등 6.4 메커니즘 운영체계 및 절차 - CDM 활동 및 CERs 전환 절차 6.4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 SOP 및 OMGE 절차 등	추가 지침 논의 및 합의 - 유치국 승인, MCU, 사후 승인 - A6.4ERs 허가 절차 - 방법론 및 제거에 관한 표준 -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 지속가능발전 도구(A6.4 SD Tool)

본 장은 6.2조 또는 6.4조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록에 포함된 관련 결정문과 지침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리협정 6.2조

| 2/CMA.3 Annex 협정 제6.2조 2항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2021년 11월 COP26에서는 제6조 2항 협력적 접근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본 지침이 최초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ITMO 정의 및 적용범위 △참여국 요건 △초기보고서, 연례 보고 및 정례 보고서 등 보고 체계 △검토체계 △추적 및 플랫폼 구축 △환경건전성 및 적응자원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개별 당사국이 양자 또는 다자 방식으로 협력하여 자국의 NDC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해당 지침에서 사업자들이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사항은 ITMOs 정의 및 적용범위, 참여국 요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침에서 정의하는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즉, ITMOs는 국가들 간에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활동의 정량화 가능한 성과물을 의미하며, 협력적 접근법 체계 하에서 일종의 '통화' 역할을 합니다. 지침에서는 이 ITMOs가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감축실적이 ITMOs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됩니다.

- ☑ **추가성(Additionality) 확보** : 해당 감축은 협력적 접근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감축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이 없었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감축은 ITMOs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검증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감축** : 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제거 실적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검증기관이 감축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감축·제거 또는 감축공편익** : ITMOs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를 의미하며, 적응 사업이나 경제 다각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공편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측정 단위 요건 충족** : 기본적으로 tCO₂eq 단위로 측정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NDC와 정합성이 확인되면 비 온실가스 지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당사국의 승인** : ITMOs는 참여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ITMOs만 NDC 이행 또는 기타 국제감축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협력적 접근법에 참여하는 국가의 필수 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이어야 하며, NDC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DC 달성을 위한 ITMOs 사용 승인 체계, ITMOs 추적을 위한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ITMOs 회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신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파리협정의 전지구적 목표와 연계하기 위해 개별 당사국의 NDC, LTS 그리고 파리협정의 전반적인 장기 목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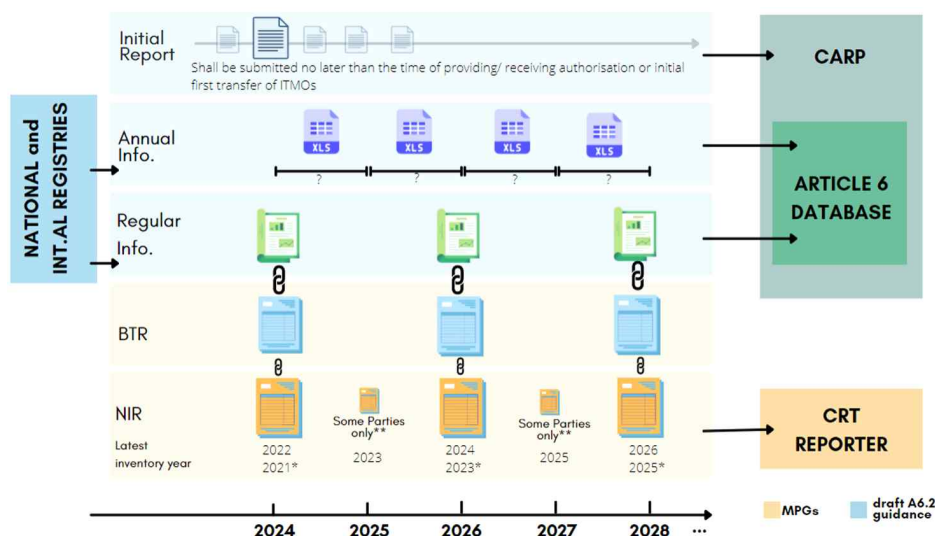
6/CMA.4 Annex 기록 및 추적에 관한 지침

2022년 COP27, CMA4에서 채택된 결정문 6/CMA.4의 부속서 I 은 결정문 2/CMA.3 부속서 VI장(기록 및 추적)의 규정을 구체화한 지침입니다.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은 투명한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기록을 기반으로 거래되며, 이 지침은 감축실적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고 검증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전·사용되는지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사업자가 확보한 감축실적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이자, 등록부 관리자, ITMO 거래 승인기관, 프로젝트 수행자 등 모든 참여주체가 공통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 간 감축실적 이전은 각국의 NDC 달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동일한 감축량이 두 국가에서 중복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침은 상응 조정 방법과 회계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감축실적의 국제적 인정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상응조정은 정부가 수행하지만, 그 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개별 사업의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축 실적의 산정 논리, 활동데이터, 검증 자료 등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 및 추적 지침은 UNFCCC가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검토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BTR 제출과 국제검토 과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나, 보고에 포함되는 정보 중 상당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감축활동 데이터에서 비롯됩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부정확하게 관리할 경우, 해당 감축실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조정 과정에서 제외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침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추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보고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3]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정보와 격년투명성보고서 간의 관계



□ 파리협정 6.4조

| 3/CMA.3 Annex 6.4조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RMP)

2021년 COP26, CMA3에서 채택된 결정문 3/CMA.3은 감축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운영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사업자의 프로젝트 설계, 등록, 감축실적 발급, 거래 과정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지침에서는 △참여국의 책임과 역할 △사업 추진절차 △환경건전성 및 지속가능발전 보장 △적응비용 및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기여 △중복 사용 방지와 상응조정 적용 △기존 CDM 활동의 전환 및 CER의 제한적 활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지침은 6.4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당사국이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6.2조 지침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해당 국가에서 제6.4조 활동을 전담하여 승인·감독할 국가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을 국가지정기구(DNA)라고 하며, DNA는 국가를 대표하여 제6.4조 활동의 적정성, 지속가능발전 기여, 국제기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DNA가 요구하는 승인 절차, 자료 제출 요구, 지속가능발전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사업 내용과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등록부터 감축실적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포함하며,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 정합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제6.4조 활동은 UNFCCC 사무국 산하의 감독기구(S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방법론 적용,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같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독립된 검증기관(DOE)의 검증을 거쳐 감축실적 발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는 검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CDM과 유사하지만, 6.4조는 환경건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림 4]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의 활동 주기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발전 보장은 제6.4조 메커니즘의 핵심 가치이며,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의 추가성, 기준선의 보수성, 누출방지, 장기적 환경 무결성 유지 등 엄격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축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잠재적 위험 평가와 대응조치 마련 등 사회·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참여국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환경건전성을 확보합니다.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감독기구 운영비, 사업등록 및 감축실적 발급에 관한 수수료 등 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관련 부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감축실적 중 일정 비율을 자동취소(automatic cancellation), 적응기금 납부(Share of Proceeds for Adaptation)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급량 전부를 거래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건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며,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익성과 구조를 설계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7/CMA.4 Annex 6.4조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RMP)의 구체화

결정문 7/CMA.4 부속서 I 은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규칙·방식·절차(RMPs)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는 CDM 활동의 제6.4조 메커니즘 전환, 탄소배출권(CER)의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활용, 유치국의 보고 의무,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행정비용 및 적응 자원 확보 절차, 그리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실현 절차 등 기존의 RMP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행정비용 부담 및 적응 자원 확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프로젝트의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감축실적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분담금은 여러 유형의 수수료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등록 수수료 △포함 수수료 △발행 수수료 △갱신 수수료 △사후 변경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활동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규모별 최대 부과 금액은 △15,000 tCO₂eq 이하일 경우 2,000달러, △15,001~50,000 tCO₂eq일 경우 6,000달러, △50,000 tCO₂eq 초과 또는 PoA는 12,000달러로 설정됩니다. 포함 수수료는 PoA에 CPA를 추가할 때 건당 최대 1,000달러로 부과되며, 발행 수수료는 요청된 A6.4ER 발행량에 비례하여 단위 당 최대 0.20달러가 부과됩니다. 갱신 수수료는 최초 등록 시 납부한 등록 수수료 또는 포함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감축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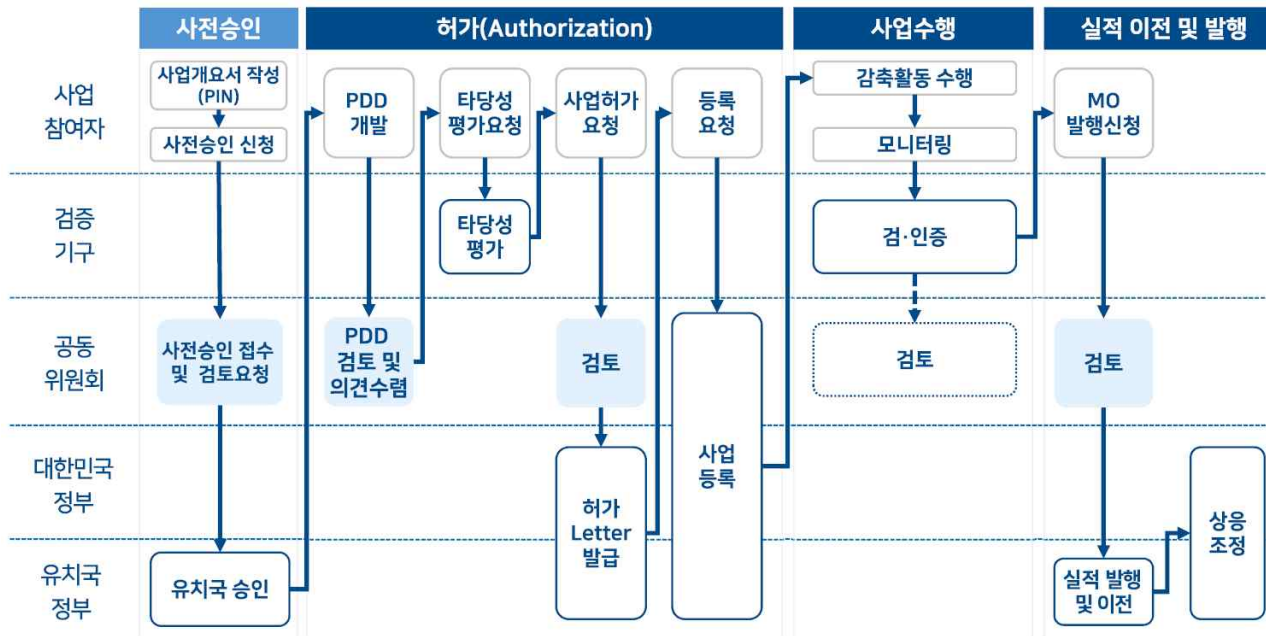
01.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
02.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 추진절차
03. 6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사항



01

파리협정 제6조 기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

가 6.2조 추진절차



※ 국내법 상에서는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승인심의를 국제감축심의회에서 담당

파리협정 6.2조 사업은 UNFCCC 하 감독기구인 SB에서 세부 이행절차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6.4조 사업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통용 및 규정된 절차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당사국은 자국의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규칙, 절차 등을 수립하여 파리협정 당사국과 파리협정 6.2조 기반의 자발적인 협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문안에 파리협정 6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양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해당 절차를 기반으로 한 세부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사전승인

사업자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폐수/폐기물 처리 등)을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개발문서(Project Idea Note, PIN)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PIN 작성이 마무리되면 공동위원회에 PIN과 사전승인 신청 문서를 제출하고, 서류 검토를 요청합니다.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양 당사국은 신청한 사업이 사전승인 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2) 사업계획서(PDD) 작성 및 타당성평가

사전승인 이후 사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개요뿐 아니라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인지, 사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록할지 등과 같은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독립적인 제3자(VVB)에 의해 타당성평가를 거치게 되며, 감축실적 산정의 타당성과 모니터링 계획의 신뢰성이 평가됩니다. 검증기관들은 사업이 실제로 추가적인 감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업자들이 수립한 모니터링 계획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림 7] 사업개발문서(PIN) 및 사전승인 신청문서

【별지 제7호 서식】 국제감축사업 개발문서(PIN, 예비타당성지원사업용 결과를 제출 양식)

사업개발문서(PIN, Project Idea Note)		
사업 정보 요약		
사업명	(국문) (영문)	
사업 대상국		
사업 대상국 확인서		
사업장 주소		
사업 수행자(제안자)		
사업목적		
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감축사업 방법론		
사업 시작일		
인증유효기간		
예상 감축량	총 예상 감축량 : tCO ₂ e	
	연도	연간 예상 감축량(tCO ₂ e/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	
연평균 예상 감축량		
감축실적 활용방안	NDC 달성/인증 후 판매/결정되지 않음 등	
사업비	투자비, 정부지원 등을 구분하여 작성	
버전	작성 문서 버전(Version 2.2 등)	
작성일	문서 작성 일자	

【별지 제1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대상국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관련 서류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가이드라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별지 제7호 서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 허가 및 등록

타당성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후, 사업자는 공동위원회에 타당성평가 보고서와 유효한 PDD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위원회는 제안된 감축활동이 승인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공동허가성명서(Joint Authorization Statement)를 발급하고, 양 당사국에 사업 허가에 대해 알리게 됩니다. 공동허가성명서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허가서(LoA)를 발급해야 하며, 양 당사국으로부터 LoA를 수신한 날짜에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LoA를 받은 직후, 사업자는 허가된 사업을 양 당사국의 레지스트리(등록부)에 등록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양 당사국은 각국의 레지스트리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4)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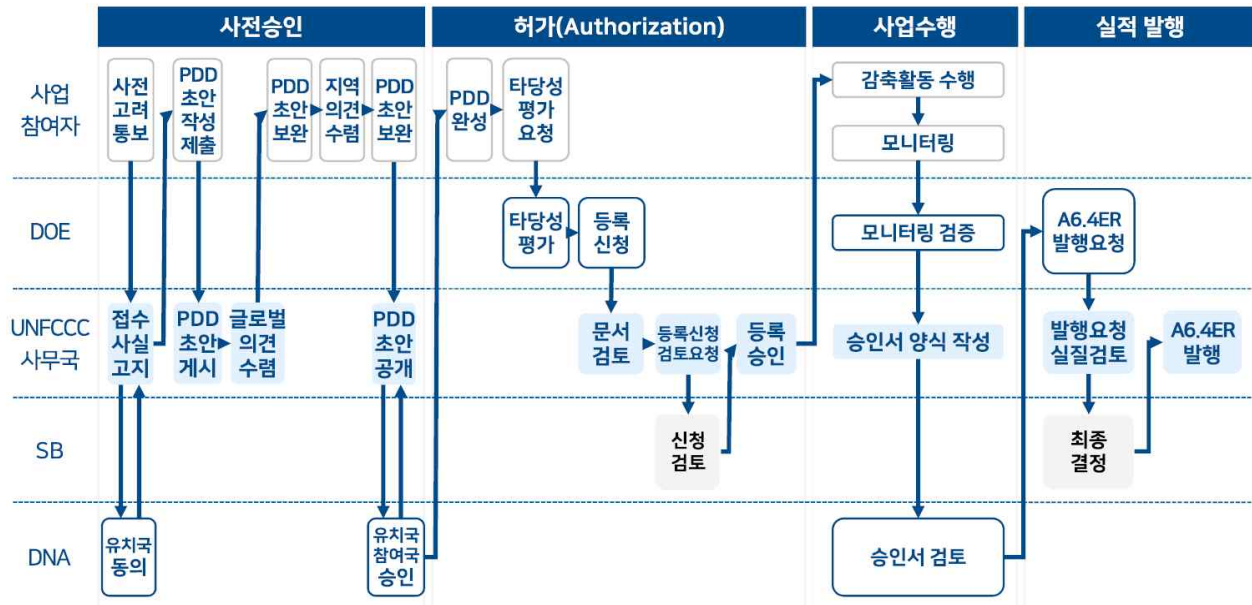
사업자는 실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량을 모니터링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검증(Verification) 및 감축실적 발행(ITMOs Issuance)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검증기관(VVB)에 의해 검증을 받게 되며, 검증 결과는 검증보고서 형태로 마련됩니다. 사업자는 감축실적 발행을 위하여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동위원회는 상대국 정부에 감축실적의 발행 및 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직후, 유치국 정부는 감축실적을 발행합니다. 이후 정부는 자국의 레지스트리에 ITMOs로 승인된 감축실적의 양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정부로 이전하며, 사업자와 한국 정부에 실적 발행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6.4조 추진절차



파리협정 6.4조는 교토의정서 체제 하 CDM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UNFCCC 하에 설치된 감독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A6.4ERs를 발행·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6.4조 사업의 세부 수행절차는 CMA 결정문과 6.4조 세부 이행규칙 등에 의해 구체화되어 왔으며, CDM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서(PDD) 작성

사업자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6.4조 사업에 대한 요약 문서를 작성하여 UNFCCC 사무국에 사업개요, 방법론 등의 기술적 사항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 고려 통보 이후 UNFCCC에서 6.4조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마련한 양식에 맞게 주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사업에 대한 개요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사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록할지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타당성 평가(Validation)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독립적인 제3자(DOE)에 의해 타당성평가를 거치게 되며, 감축실적 산정의 타당성과 모니터링 계획의 신뢰성이 평가됩니다. DOE는 사업이 실제로 추가적인 감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업자들이 수립한 모니터링 계획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사업 유치국의 승인(Host Country Approval)

사업에 대한 승인은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지정기구(DNA)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치국 정부는 이 사업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부합하는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상응조정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식 승인을 부여합니다.

(4) UNFCCC 6.4조 감독기구 등록

사업 유치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UNFCCC 산하의 6.4조 감독기구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감독기구가 심사 후 등록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은 정식으로 6.4조 메커니즘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5)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사업자는 실제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량을 모니터링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검증(Verification) 및 감축실적 발행(A6.4ER Issuance)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DOE에 의해 검증을 받게 되며, 검증이 완료되면 그 결과가 감독기구에 제출됩니다. 감독기구에서 검증 결과를 승인할 경우, 해당 사업은 감축실적(A6.4ERs)을 발행받게 됩니다.

이 감축실적은 국가 간 양자협력에서 ITMOs로 전환되어 NDC 달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이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02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감축사업 세부 추진절차

가 사업발굴 및 기획, 타당성조사(F/S)

- ☑ 사업자는 파리협정 6조 사업 대상국을 선정할 후 사업 분야 및 아이템을 확정함. 이후 선정된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확인하며, 적용 불가능한 경우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음
- ☑ 사업자는 발굴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함

1 아이템 발굴 및 추진 가능성 검토 사업자

(1) 사업 대상국 선정



개도국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에 지사가 있어요. 이 국가들에서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고려하는 대상국이 파리협정 6조 참여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양자협정 체결 현황이나 각 국가들이 UNFCCC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후보 국가를 선별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는 파리협정 6조 사업을 추진할 국가를 선정해야 하며, 이때 파리협정 6.2조 및 6.4조 지침에 명시된 참여국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6조 주요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참여국의 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검토항목	
6.2조	•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입니까?	☐
	• NDC를 제출한 국가입니까?	☐
	• 최신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입니까?	☐
	• ITMOs 승인 기반(지침, 절차, 규칙 등)을 마련하였습니까?	☐
	• ITMOs 추적 기반(지침, 절차, 규칙 등)을 마련하였습니까?	☐
	•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아이템이 해당 국가의 NDC 및 LT-LEDs에 명시되었습니까?	☐
6.4조	•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입니까?	☐
	• NDC를 제출한 국가입니까?	☐
	• 대상국에서 DNA를 지정하고, UNFCCC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아이템이 해당 국가의 NDC 및 LT-LEDs에 명시되었습니까?	☐

특히, 6.2조 사업은 양 국가 간의 양자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 대상 국가로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향후 협정 체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표 3> 대한민국 양자협정 체결 현황 ('25.10 기준)

구분	국가명
양자협정 체결(9개국)	•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가봉, UAE, 페루, 모로코,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가서명(4개국)	•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 조지아

참고 사업 대상국 선정 시 참고 가능한 국가별 자료

☑ 국가별 NDC

https://unfccc.int/NDCREG?gclid=EAlalQobChMIZYw0hPvlgwMV8tMWBRO_cwBjEAAYASAAEgJAofD_BwE

☑ 국가별 NIR

https://unfccc.int/ghg-inventories-annex-i-parties/2023?gclid=EAlalQobChMI0ces9_vlgwMV5zd7Bx39jwTDEAAYASAAEglhafD_BwE

☑ 국가별 DNA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article-64-mechanism/national-authorities?gclid=EAlalQobChMI76_vn_7lgwMVqTp7Bx3-HQ42EAAAYASAAEgKZKfD_BwE#overview

(2) 사업 분야 및 아이템 확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검토해보니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축사업 아이템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면 좋겠어요. 스리랑카에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스리랑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계획 등을 살펴보면 이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축분야나 감축기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패널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태양광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사업자는 사업 대상국에서 제출한 NDC, BTR, LT-LEDs에 명시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이행 조치 등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분야/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는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추가성, 비용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업 추진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가에서 6.4조 DNA를 설정하고 UNFCCC에 6.4조 유치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문서(Host Party Participation Requirement)를 제출한 경우,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개별 국가가 6.4조 사업 승인 분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

추가성(Additionality):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축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과 이점을 평가하는 기준

국가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을 위해 각 당사국이 지정한 국가승인기구로, 6.4조 사업 참여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을 담당

<표 4> Host Party Participation Requirement 양식

A6.4-FORM-AC-001	
 HOST PARTY PARTICIPATION REQUIREMENTS FOR ARTICLE 6.4 MECHANISM (Version 01.0)	
SECTION 1: GENERAL INFORMATION	
Country:	
Institution name:	
Institution address: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ion: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Phone number of the representative:	
ADDITIONAL REPRESENTATIVE (OPTIONAL)	
Additional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ion:	
E-mail address of the additional representative:	
Phone number of the additional representative:	
SECTION 2: PARTICIPATION RESPONSIBILITIES	
Is your country a Party to the Paris Agreement?	☐ Yes ☐ No
Has your country prepared, communicated, and is it maintaining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 Yes ☐ No
Has your country designated 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 for the Article 6.4 mechanism and communicated that designation to the UNFCCC secretariat?	☐ Yes ☐ No

Version 01.0 Page 1 of 2

Section 1 General Information

- 참여국의 기본정보(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Section 2 General Information

-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 NDC 제출여부
- A6.4 DNA 지정여부

Section 3~4 Sustainable Development & Project Approval, Positive Project List

- A6.4 메커니즘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과 NDC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각 부문에서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A6.4조 사업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

Section 5 Additional Information

- 기타 정보(선택 항목)

(3) 방법론 확인/개발

스리랑카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양자협정 표준문안에는 CDM 방법론(공식적으로 사용이 중지되지 않은 경우), 파리협정 6.4조 방법론, 공동위원회에서 승인한 기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현재 관련 CDM 방법론이 존재하므로, 이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단, 이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사용이 중지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자는 선정한 사업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법론이 부재할 경우 별도로 개발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6.2조 사업의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만 사용할 수 있으며, 6.4조 사업의 경우 6.4조 감독기구에서 승인한 방법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자협정 표준문안에 명시된 적용 가능 방법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CDM 방법론 단, 적용하려는 CDM 방법론이 공식적으로 사용 중지되지 않은 경우
- 파리협정 제6조 4항에 따른 파리협정 크레디팅 메커니즘(PACM) 방법론
- 협정 하 적용 가능한 방법론 리스트에 포함된, 공동위원회에서 승인한 기타 방법론

2 타당성조사(F/S) 사업자



사업 대상국가와 감축사업 분야/아이템도 정했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바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지, 법·제도, 기술,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러한 조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법·제도, 기술, 경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예타/본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부(환경·에너지), 산업부(산업), 국토부(건물·교통·건설), 해수부(해양·수산·해운·항만), 농축산부(농업·축산·식품), 산림청(임업)에서는 기업들의 타당성조사,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원 분야나 지원 규모, 지원조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자는 앞서 발굴한 아이টে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국내 국제감축사업 관장기관에서 운영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지원 없이 기업의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여 직접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검토항목		
예타	• 사업 추진 유형(6.2조 또는 6.4조)	☐ 6.2	☐ 6.4
	•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또는 MOU 체결국가입니까?	☐ Y	☐ N
	• 감축량 산정 방법론이 존재합니까?	☐ Y	☐ N
	• 대상국의 사업 추진의향을 확보하였습니까?(LoI, MOU 체결 등)	☐ Y	☐ N
	• 사업 분야 또는 적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까? (NDC, LEDs, 국가 정책 등과의 부합성)	☐ Y	☐ N
	• 대상국은 파리협정 6.2조 또는 6.4조 사업 추진요건에 부합합니까?	☐ Y	☐ N
	•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여에 부합하는 사업입니까?	☐ Y	☐ N

예비타당성조사는 본타당성조사 수행 이전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서, 사업 대상지 분석, 사업 분야 및 사업 대상국과 관련된 기초 현황 조사,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감축실적 판매에 따른 예상 수익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익성,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자는 본타당성조사 또는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국 정부로부터 사업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수신하거나, 대상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대상국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국제감축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전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국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협약 체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타당성조사

사업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사업에 대해 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국내 국제감축사업 관장기관에서 운영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지원 없이 기업의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여 직접 본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검토항목		
본타	• 대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LoA 확보 또는 MOU 체결 등)	☐ Y	☐ N
	• 환경영향평가 및 SDGs 분석 수행	☐ Y	☐ N
	•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 Y	☐ N
	• 투자비 조달방안 수립	☐ Y	☐ N
	• 대상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 검토	☐ Y	☐ N
	• PDD 마련	☐ Y	☐ N
	• 대상국의 ITMOs 이전에 관한 약속서 확보	☐ Y	☐ N

본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인하였을 경우 추진하는 심층 조사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환경·사회영향평가,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평가, 투자/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 수준의 검토를 수행합니다. 본타당성조사 결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익성 및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자는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국 정부로부터 사업허가서(LoA)를 수신하여 사업 허가권을 확보하거나, 대상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대상국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국제감축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타당성조사 시행 이전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협약 체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예비 조사로, 대상지 분석, 사업 분야와 관련된 기초 현황 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 감축량 산정 방법론 적용 조건 검토,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ITMOs 판매 수익 검토 등을 수행하고, 기본설계 수준의 검토를 진행합니다.

본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인했을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타당성조사는 사업성을 확인한 사업에 대한 심층조사로, 법률·재무적 타당성 분석, 환경·사회영향평가, 리스크 검토, 재원조달(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수준의 검토를 진행합니다.

나 사전고려(Prior Consideration)

- ✓ 6.4조 사업의 사업자는 UNFCCC 사무국에 사전고려 통보를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글로벌 및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사업 유치국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 6.2조 사업의 사업자는 사업개발문서(PIN)을 개발 및 제출하며, 공동위원회의 PIN 검토를 거쳐 유치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모두 취득해야 함

6.4

1 사전고려 사업자



타당성조사를 해보니, 이 사업은 6.4조 메커니즘을 활용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사업을 등록하려는 의사를 UNFCCC 사무국에 알려야 해요. UNFCCC에서 마련한 온라인 폼(FORM)에 사업의 개요와 활용하려는 6.4조 방법론,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감축량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고려 통보 1년 이내에 PDD를 제출해야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6.4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UNFCCC 사무국에 알려야 하며, 이 절차를 '사전고려 통보'라고 합니다. 사전고려 통보는 UNFCCC에서 마련한 양식(A6.4-FORM-AC-002)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해당 양식에 사업명, 사업 참여자, 사업 대상지, 적용 기술, 방법론, 사업 시작일, 사업 유형(고정형/갱신형), 인증 유효기간, 예상 감축량 등을 기입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고려 통보 양식(A6.4-FORM-AC-002) :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rRJskmpAM0-2hveP9YliClwaFEo06KJEojmwXUiFg35UOFJIUDdTSVhSMUdXVEZMVOVLWFFQVTBNQy4u&route=shorturl>

사전고려 통보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시작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있는 경우, 2024년 1월 1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전고려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고려 통보 1년 이내 또는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이용 가능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PDD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고려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용어정리

고정형/갱신형: CDM과 동일하게 6.4조 메커니즘 또한 인증 유효기간 유형을 고정형 및 갱신형으로 구분

인증 유효기간: 감축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간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자



사전고려 통보까지 마쳤어요.
이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6.4조 메커니즘 규칙/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프로젝트 추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가 필요해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1)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6.4조 사업에 대해 UNFCCC, 사업 유치국,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이 6.4조 메커니즘의 원칙, 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UNFCCC 사무국에 PDD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무국이 PDD 초안을 지정된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A6.4 SD Tool 등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에 대해 지역 단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사업자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이해관계자와 지역 대표 등을 초청하여 해당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영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는 사업자 또는 유치국 DNA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게 되며, 사업참여자는 의견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계획서에 이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된 자료를 지정운영기구(DOE)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파리협정 6.4조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글로벌,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4조 메커니즘에서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사회적인 수용성과 인권·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와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유치국 승인



이 사업을 6.4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즉 유치국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승인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UNFCCC 사무국에서 공개한 사업계획서를 유치국 DNA에서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을 승인하고 승인서를 사무국으로 회신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유치국 DNA는 사업참여자에게 승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무국은 유치국 DNA로부터 받은 결과를 사업참여자에게 통보합니다.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 따라 사업 등록 및 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치국의 승인 및 허가(Host Party Approval and Authorization)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6.4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치국의 승인은 UNFCCC 사무국과 유치국 DNA, 사업참여자 간 사업 계획서와 승인서의 검토 및 회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UNFCCC 사무국은 사업자가 초안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6.4 메커니즘 플랫폼에 게시하고, 유치국은 DNA를 통해 사업이 자국의 NDC,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그 승인서를 사무국으로 발송합니다.

유치국의 승인서는 UNFCCC 사무국에서 마련한 표준 양식(A6.4-FORM-GOV-010)을 활용하여 유치국에서 작성하며, 양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 5> 6.4조 메커니즘 유치국 사업 승인 서류

작성항목	주요내용
일반정보	• 문서참조번호, 제출일, 사업명 및 고유식별번호
유치국 정보	• 유치국, DNA,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업정보	• 사업명 및 사업내용, 적용 방법론 및 부문, 사업 분야, 예상 감축량
사업승인	• 해당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 • NDC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가능성 언급
사업 참여자	• 참여기관/참여자 명, 국적 및 법적 지위, 역할
승인 내용	• 특정 기관/참여자에 대한 승인, 승인 범위, 조건 및 제한사항
서명 및 인증	• 유치국 정부 대표자 성명, 직위 및 소속기관, 서명 및 공식 직인

※ 출처 : Host Party Approval and Authorization of Activity Participants Form Article 6.4 Projects

파리협정 6.4조 유치국 승인 양식(A6.4-FORM-GOV-010):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6.4-FORM-GOV-010.pdf>

6.2

1 사업개발문서(Project Idea Note, PIN) 개발 사업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와 스리랑카가 양자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6.2조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6.2조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던데..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네! 6.2조 사업참여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개발문서(PIN),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사업개발문서(PIN)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 사업계획서보다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 신청서는 국제감축사업 지침 [별지 1], [별지2]를 활용하거나, 향후 공동위원회에서 마련될 별도 양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6.2조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공동위원회의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개발문서(Project Idea Note, PIN)를 개발하고, 해당 문서와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IN에는 사업개요, 적용한 방법론, 감축량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추후 공동위원회에서 별도 양식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업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서 활용되는 PIN 양식

- ☑ 산업부의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KOTRA에서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최종산출물로 사업개발문서(PIN)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항목	주요내용
사업 정보 요약	사업명, 사업 대상국, 사업 대상국 확인서, 사업 수행자(제안자), 사업장 주소, 수행자, 목적, 인증 유효기간, 예상 감축량, 감축실적 활용방안 등
사업개요	일반사항, 사업 대상국, 사업 추진 구조, 기술 개요,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국제감축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사업모델 및 전략	사업 규모, 감축실적의 활용방안, 사업 위험 및 완화 방안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영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환경영향
감축량 산정 방법	적용방법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추가성 입증, 환경 건전성 검토, 감축량 산정 방식, 감축량 산정결과,

※ 출처 : KOTRA 국제감축사업 가이드라인(타당성조사) [별지 제7호 서식] 국제감축사업 개발문서

용어정리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전 세계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

2 PIN 검토 및 승인 사업자 정부



우리 사업에 대한 PIN과 사전승인 신청서를 모두 준비했어요. 이걸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사전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준비한 PIN과 사전승인 신청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면, 공동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양국 정부의 평가는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정도 이루어지고, 큰 이슈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사전승인을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이 거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는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보완하여 재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자는 작성된 PIN과 함께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동위원회는 사전승인 신청 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후, 사전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사업유치국 및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된 서류들을 전달합니다.

양국 정부는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후, 즉 공동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업이 자국의 파리협정 6조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우선순위에 기여하는 사업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업이라고 평가된 경우 사전승인 결정 후 사업자에게 사전승인 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은 양국 정부 모두로부터 사전승인 통보를 받은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승인한 후,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

다 허가(Authorization)

- ✓ 사업자는 사전승인된 사업의 사업계획서(PDD)를 개발함. 6.4조 사업은 PDD 초안을 UNFCCC에 제출하여 의견 수렴 후 최종본을 제출하며, 6.2조 사업은 초안을 공동위원회에 제출해 의견을 수렴함
- ✓ 작성된 PDD는 제3자 검증기관의 타당성평가를 거치며, 사업 승인 이후 6.4조 사업은 감독기구(SB)의 허가 및 수수료 납부 후, 6.2조 사업은 양국 레지스트리 등록 신청을 통해 각각 등록됨

1 사업계획서(Project Design Document, PDD) 개발 사업자



우리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도 완료되었어요!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는 어떤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나요? 6.2조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6.4조 PDD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6.4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A6.4-FORM-AC-020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PDD에는 글로벌/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UNFCCC 6.4 메커니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해요.

6.2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해요.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PDD 초안을 작성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동위원회는 PDD 초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업자들은 공식의견을 반영하여 PDD를 보완하게 되죠.



6.4

사업자는 UNFCCC에서 마련한 6.4조 메커니즘 PDD 양식(A6.4-FORM-AC-020)을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사업개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6.4-FORM-AC-020															
 PROJECT DESIGN DOCUMENT (PDD)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Host Party:	Choose a Party														
Other participating Parties:	Choose a Party														
Activity participant(s): (add rows if needed)	<table border="1"> <thead> <tr> <th>Type of Party</th> <th>Name of activity participant(s)</th> <th>Party that is to provide authorization</th> </tr> </thead> <tbody> <tr> <td>Choose a type of Party</td> <td>>></td> <td>Choose a Party</td> </tr> <tr> <td>Choose a type of Party</td> <td>>></td> <td>Choose a Party</td> </tr> <tr> <td>Choose a type of Party</td> <td>>></td> <td>Choose a Party</td> </tr> </tbody> </table>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y that is to provide authoriz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y that is to provide authoriz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PDD version number:	>>														
PDD completion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s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Sectoral scope(s):	>>														
Type of the project:	☐ Emission reductions activity ☐ Removals activity ☐ Combined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s activity														
Estimated annual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over the crediting period (tCO ₂ e/year):	>>														
Version 01.0 Page 1 of 36															

Section 1 Project Description

- 프로젝트 정보(목적, 유치국이 명시한 6.4조 활동 유형과의 부합성, 위치 등), 구현된 기술/조치 등

Section 2 Application of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 방법론 및 베이스라인 적용, 추가성 입증, 비영속성 및 역전 위험, 감축량 및 모니터링 계획 등

Section 3 Start Date, Crediting Period Type and Duration

- 프로젝트 시작일 및 예상 운영기간, 인증 유효기간 등

Section 4 Environmental · Social ·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s

- 6.4조 SD Tool 및 유치국 규정에 따른 환경 및 사회영향, 지속가능개발 영향

Section 5 Local Stakeholder Consultation

-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내용

Section 6 Confirmation of Avoidance of Double or Revived Registration

- 체크리스트를 통한 프로젝트의 중복 또는 재등록 방지 확인

6.4조 사업의 PDD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SB에서 개발한 지속가능개발 평가 도구(A6.4 SD Tool)를 활용한 평가 결과를 PDD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도구는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와 '지속가능개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 Tool에서는 추진하려는 사업의 잠재적인 부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영향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 위해 11개 부문에 대한 위험 평가를 위한 Tool입니다.

사업자는 SB가 PDD 작성 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UNFCCC 사무국에 초안을 작성·제출한 후, 글로벌 및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파리협정 6.4조 지속가능개발 평가도구(A6.4 SD Tool)

- ☑ 6.4조 메커니즘 사업 참여자는 6.4조 SD Tool을 활용하여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와 지속가능개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유치국의 환경·사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SDGs에 대한 긍정적 기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개요	환경 및 사회 안전망 구축	개요	지속가능개발(SDI) 영향 평가
목적	-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잠재적 부정 요소 파악 위한 리스크 평가 - 환경 및 사회 리스크 요소 관리 지침 이행	목적	- 유치국의 우선 지속가능성 개선 과제 확인 및 17개 SDGs 지표 긍정 및 부정 요소 평가 - 지표별 모니터링 요소 확인
양식	- A6.4-FORM-015 : A6.4 환경 및 사회 안전망 위험 평가서 - A6.4-FORM-016 : A6.4 환경 및 사회 관리 계획서	양식	A6.4-FORM-017 : 지속가능발전 영향 평가서
구성	- A6.4-FORM-AC-015 : 11개 환경·사회 보호 요소(에너지, 대기/토지/수자원, 생태, 노동, 건강·안전, 성평등, 토지취득·이주, 원주민, 부패, 문화유산)별 기본 질문(ELQ)과 추가 질문(AQG)으로 구성 - A6.4-FORM-AC-016 : A6.4-FORM-AC-015에 의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하여 환경 위험 완화 조치, 사회 위험 완화 조치 및 모니터링 지표 작성 필요	구성	{1단계} 유치국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우선순위 반영 : 사업이 위치한 국가의 SD 정책, 우선순위, 법적 요건 등 고려 {2단계} SDGs 영향 평가 : 사업이 UN SDGs 17개 중 어떤 목표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3단계} SD 모니터링 지표 설정 : SDGs 및 세부 목표에 기반한 활동별 SD 모니터링 지표 설정

사업 참여자는 주 4조 사업 등록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유치국의 SD 우선순위와 SDGs 이행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PDD 문서에 반영해야 함

6.2

사업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PDD) 초안을 작성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에 대한 개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사용한 방법론,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사업 유형, 추가성 입증,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 하며, 이는 6.4조 사업계획서와 유사한 구성을 됩니다.

<표 6>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			
사업 개요	사업명	· 영문명: · 국문명:	
	사업 대상국		
	사업 수행자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적용 방법론	적용 방법론	· 방법론 명: · 방법론 버전: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		
온실 가스 감축 량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년)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2. 사업대상국(위치)			
국가			
지역/주/도 등			
시/군/구 등			
위도, 경도			
1.3. 국제감축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구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 ₂ e/년	%
사업자 1			
사업자 2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	년 월 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생략/고정)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작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작성항목	주요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대상국, 감축실적 소유권,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의 중복성, 디번들링 평가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방법론,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추가성 입증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산정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프로젝트 배출량(흡수량)/누출량/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예상 감축량(흡수량) 계산 및 요약
모니터링 계획	베이스라인 변동 데이터 및 인자, 모니터링 계획 설명
참고자료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수행하고, 결과를 기재

※ 출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PDD를 작성할 때에는 탄소크레딧 메커니즘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방법론을 활용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이 종료되지 않은 CDM 방법론,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방법론, 공동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방법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수신한 PDD 초안을 양 국별로 마련한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하고, PDD 초안이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30일 간 공식의견(Public Comment)을 수렴한 후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자마자 취합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참고 PDD의 작성

① 일반정보

- ☑ 사업명 및 사업참여자명
- ☑ 사업계획서 버전 및 작성완료 일자
- ☑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및 표준 베이스라인
- ☑ 인증 유효기간의 유형(고정형/변동형)
- ☑ 사업 시작일 및 인증 유효기간

②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개요
- ☑ 사업유치국 및 사업 대상지 위치,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 위·경도
- ☑ 적용된 감축기술 및 조치
- ☑ 사업참여국 및 사업참여자

③ 방법론 및 베이스라인

- ☑ 중복성 평가 : 사업이 타 감축 메커니즘에 등록 및 등록 신청되었는지 여부
- ☑ 디번들링 평가 : 관리 상의 이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소규모 및 극소규모로 나누어 승인 신청했는지 여부를 평가
- ☑ 적용 방법론 및 버전 : 적용된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 조건 등에 따른 선정 타당성
- ☑ 사업의 경계 :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 및 사업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적용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선정 과정 및 타당성 기술
- ☑ 추가성 검토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법·제도적, 경제적 추가성을 설명

④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 단위, 설명, 출처, 적용값, 측정 절차
-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 ☑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

⑤ 모니터링 계획

- ☑ 변동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 단위, 설명, 출처, 적용 값, 측정 절차, 모니터링 주기 등
- ☑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및 관리 구조, 자료 수집 및 보관방법, 모니터링 지점 등 모니터링 계획

A6.4-FORMAC-020

PROJECT DESIGN DOCUMENT (PDD)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Host Party: Choose a Party

Other participating Parties: Choose a Party

Activity participant(s) (add rows if needed)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y that is to provide authoris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Party

PDD version number: **

PDD completion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Sector(s) selected: **

Type of the project: ☐ Emission reductions activity ☐ Removals activity ☐ Combined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s activity

Estimated annual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over the crediting period (tCO₂e/year): **

Version 01.0 Page 1 of 36

A6.4-FORMAC-020

SECTION B. Application of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B.1. References to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

B.2. Applicability of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

Identify the UNFCCC reference number, title and version of the methodology, other methodological regulatory documents including methodological tool, standardized baseline approved by the Supervisory Body, or the methodological requirements specified by the host Party.

Applicability condition in the methodological regulatory document or the methodological requirement specified by the host Party	Compliance of the project with the applicability condition in the methodological regulatory document or the methodological requirement specified by the host Party
**	**
**	**
**	**

B.3. Project boundary, sources, sinks and greenhouse gases

**

B.3.1. Baseline emission/removals

Source/reservoir/pool	GRG	Justification/Explanation
Source/reservoir/pool 01	CO ₂ ☐ included ☐ not included	**
	CH ₄ ☐ included ☐ not included	**
	N ₂ O ☐ included ☐ not included	**
	Other ☐ included ☐ not included	**
Source/reservoir/pool 02	CO ₂ ☐ included ☐ not included	**
	CH ₄ ☐ included ☐ not included	**
	N ₂ O ☐ included ☐ not included	**
	Other ☐ included ☐ not included	**
---	CO ₂ ☐ included ☐ not included	**
	CH ₄ ☐ included ☐ not included	**
	N ₂ O ☐ included ☐ not included	**
	Other ☐ included ☐ not included	**

Version 01.0 Page 3 of 36

A6.4-FORMAC-020

B.3.2. Project emission/removals

Source/reservoir/pool	GRG	Justification/Explanation
Source/reservoir/pool 01	CO ₂ ☐ included ☐ not included	**
	CH ₄ ☐ included ☐ not included	**
	N ₂ O ☐ included ☐ not included	**
	Other ☐ included ☐ not included	**
Source/reservoir/pool 02	CO ₂ ☐ included ☐ not included	**
	CH ₄ ☐ included ☐ not included	**
	N ₂ O ☐ included ☐ not included	**
	Other ☐ included ☐ not included	**
---	CO ₂ ☐ included ☐ not included	**
	CH ₄ ☐ included ☐ not included	**
	N ₂ O ☐ included ☐ not included	**
	Other ☐ included ☐ not included	**

B.4. Establishment and description of baseline scenario

B.4.1. Identification of the baseline scenario

**

B.4.2. Identification of the BAU scenario or reference benchmark

**

B.5. Demonstration of additionality

B.5.1. Regulatory analysis

**

B.5.2. Avoidance of lock-in

**

Version 01.0 Page 4 of 36

2 타당성평가(Validation) 사업자



모두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까요?
검토는 누가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해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6.2조 사업인지, 6.4조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6.2조 사업의 경우,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해요. 6.4조 사업의 경우, 6.4조 감독기구에서 지정한 DOE를 통해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지요. 사업자는 대상 사업 유형,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증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타당성평가 요청 사업자

6.2

사업자는 수신한 공식의견에 따라 PDD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의 제3자 검증기관(VVB)에 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CDM 방법론을 사용한 감축사업에 대해, CDM에서 지정한 DOE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방법론을 사용한 감축사업에 대해, 6.4 SB에서 지정한 DOE
- 양자협정에 명시되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DOE

(2) 타당성평가 수행

6.4

6.4조 사업의 타당성평가는 6.4조 SB에서 지정한 DOE가 수행합니다. 사업자는 DOE 중 추진하려는 사업 유형의 검증코드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여 타당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DOE는 PDD 및 증빙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완전성 및 선정한 방법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파리협정 6.4조 운영 표준, 사업 규칙 및 요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는 6.4조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을 준용합니다.

6.2

VVB가 타당성평가 요청을 수신하면,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VVB가 PDD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의견에 따라 PDD를 보완해야 합니다.

타당성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검토 비용 역시 선정한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3 허가(Authorization) 사업자 정부



이 사업을 6.2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즉 유치국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승인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제3자 검증기관의 타당성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사업참여자는 타당성평가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해요.

공동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내용이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동허가성명서를 발행하며,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 승인서까지 발행되면 사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6.2

(1) 허가 신청 사업자

제3자 검증기관(VVB)이 작성한 타당성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후, 사업자는 사전고려 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타당성평가가 완료된 PDD와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완전성 검토 정부

공동위원회는 허가 신청을 수신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이 허가 가능한 사업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허가성명서(Joint Authorization Statement)를 발행하여야 하며, 허가 결정사항을 양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사업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발행 정부

양국 정부는 공동허가성명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허가서(LoA)를 각각 발행하여 신청된 사업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었음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최종 허가는 사업자가 양국의 허가서를 모두 수령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국 정부는 사업허가서를 발행한 후 초기보고서(Initial Report)를 작성하여 UNFCC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파리협정 6조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국이 감축실적을 ITMOs로 전환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보고서는 ITMOs 허가 이전(no later than the authorization of ITMOs)까지 또는 각 국가의 판단에 따라 다음 격년투명성보고서(BTR)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6.2조 사업 참여요건, NDC 정보, ITMOs에 대한 정보, 협력적 접근법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등록 사업자 정부



유치국의 허가가 완료된 사업의 등록 방법은 어떤 유형(6.2/6.4)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6.2조 사업과 6.4조의 등록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6.4조 사업의 경우, DOE의 타당성평가 이후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사무국의 완전성 검토 및 실질 검토, 감독기구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이 승인, 등록됩니다. 6.2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양국의 국가등록부에 사업 등록을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4

6.4조 사업은 DOE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이후 UNFCCC 사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사업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UNFCCC 사무국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완전성 검토(7일 이내) 및 서류 내용이 적절한지, PDD 및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는 실질검토(21일 이내)를 실시하고, SB에 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SB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별도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된 PDD 상 예상 감축량에 따른 수수료 정산·납부를 진행하며, 이 절차가 종료된 후 사업이 등록됩니다.

참고 6.4조 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구분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금액
부담금	SOP(적응기금 부담금)	발행 배출권의 5%	총 7%
	OMGE(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발행 배출권의 2%	
	COP29 결정사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국가는 SOP 5% 면제		
PA 등록	고정형 : 전체 발행기간 갱신형 : 1차 발행기간	1~15,000tCO ₂ -eq	1,500 USD
		15,001~50,000tCO ₂ -eq	5,000 USD
		50,000tCO ₂ -eq 초과	10,000 USD
발행	발행 배출권당 금액 부과		0.15 USD/ 감축실적 1단위
등록 후 변경	사업 당 금액 부과		1,500 USD
갱신	등록수수료와 동일		

6.2

사업자는 사업 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국가의 등록부(Registry)에 사업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양국 정부는 감축사업 등록 요청을 수신하자마자,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감축사업 수행

- ✓ 사업자는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수립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인자별 데이터를 취합하며,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 사업자는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할 검증기관/DOE를 선정하며, 선정된 검증기관/DOE는 검증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함

1 감축사업 수행 사업자



사업 등록까지 마쳤으니 드디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 수행방법,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였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사업 수행절차, 모니터링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사업자



등록된 6.2조, 6.4조 사업을 수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인증 유효기간 내 모니터링 기간별로 사전 고정 데이터 및 매개변수, 모니터링 데이터 및 매개변수를 취합해야 해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신뢰도 높은 자료를 통해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축실적이 불인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 시 승인된 PDD에 명시한 모니터링 계획과 적용한 방법론의 인자별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는 사업의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량/제거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해요.



(1)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사업자가 수립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적용한 방법론의 모니터링 인자별 데이터를 인증 유효기간 내 모니터링 기간별로 취합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의 단위나 데이터 출처, 측정방법,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량을 인증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취합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근거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2조 사업의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마련한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6.4조 사업의 경우 UNFCCC에서 제공하는 최신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표 7> UNFCCC 6.4조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구성

A6.4-FORM-AC-021			
 MONITORING REPORT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Monitoring report version number:	>>		
Monitoring report completion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Monitoring period:	Start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End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Sequence number: >>		
Participating Parties and authorized activity participants: (Add/remove rows as necessary)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ies that provided authoriz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PDD version number applicable to this monitoring report:	>>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s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Sectoral scope(s):	>>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achieved in this monitoring period (tCO ₂ e)	>>		
Version 01.0 Page 1 of 18			

A6.4-FORM-AC-021	
SECTION F. Continuous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Copy this table for each comment)	
Submitter of comment:	>>
Date of receipt of comment:	>>
How comment was received:	☐ Window for local stakeholders ☐ UNFCCC website
Link to comment (if relevant):	
Summary of comment:	>>
Summary of how the comment was addressed:	>>
SECTION G. Confirmation of avoidance of double issuance	
☐ Select to confirm that the reported GHG emission reductions or net GHG removals being requested for issuance of A6.4ERs are not overlapping with any of the GHG emission reductions or net GHG removals regarding which credits have been or are intended to be requested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or sector-wide GHG mitigation crediting scheme.	
☐ Select to acknowledge that if double issuance is detected, the verification by the DOE will result in a negative verification opinion, the request for issuance will be rejected by the Supervisory Body, or the amount of double issuance will be deducted from future issuance of A6.4ERs for the same A6.4 project if the requested A6.4ERs have already been issued.	
Version 01.0 Page 6 of 18	

구분	국가명
Section 1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위치, 선정 방법론, 프로젝트 인증 유효기간 등의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제시
Section 2 프로젝트의 이행	프로젝트 이행 및 운영 현황, 프로젝트 등록 후 변경사항(필요 시)
Section 3~4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와 파라미터	-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 - 고정 및 모니터링 데이터와 매개변수, 샘플링 계획, SD 지표 및 역전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설명
Section 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베이스라인 및 프로젝트 배출량, 누출량 및 감축량 산정 결과 - PDD에 명시된 감축량과의 비교표
Section 6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당사국 이해관계자가 창구 또는 UNFCCC 웹사이트에 게시한 의견을 기술
Section 7 이중발행 회피	크레딧의 중복 또는 이중발행 방지를 확인

참고 6.4조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① 일반정보

- ☑ 승인된 사업과 UNFCCC 참조 번호
- ☑ 사업참여자명
- ☑ 사업 추진되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 정보(위·경도, 행정구역 등)
- ☑ 적용되는 방법론명, 버전, UNFCCC 참조번호 및 적용된 표준 베이스라인
- ☑ 인증유효기간 유형,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및 기간
- ☑ 모니터링 기간
- ☑ 모니터링 기간에 적용된 승인된 PDD 버전

② 중복발행 방지

- ☑ 사업자는 요청한 A6.4ERs이 타 국제/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에 이미 발행을 요청했거나, 요청 예정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 ☑ 사업자의 중복 발행이 확인된 경우 A6.4ERs의 발행이 DOE 또는 SB에 의해 거부되며, A6.4ERs이 중복 발행되었을 경우 향후 A6.4ERs에서 중복 발행된 양을 차감함

③ 사업개요

- ☑ 사업자는 적용 기술, 기술 프로세스 및 장비에 대한 설명, 관련 일정을 풍마한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PRC 여부와 PRC 했을 경우의 승인일자를 표기해야 함

④ 모니터링 시스템

- ☑ 사업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소를 나타낸 도표/도식/이미지 등을 제공해야 함
- ☑ 모니터링 시스템 설명에는 데이터 수집 절차(데이터 생성, 집계, 기록, 산정 및 보고를 포함한 정보 흐름), 조직 구조,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절차 등을 포함

⑤ 감축량 산정

- ☑ 모니터링 기간 동안 승인된 6.4조 사업에 대해 사용된 산정식과 산정식에 따른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제거량 값을 작성해야 함
- ☑ 승인된 6.4조 사업의 PDD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실제 모니터링 되어 산정된 값을 비교표로 제시해야 함
- ☑ 승인된 PDD에 명시된 것과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순제거량의 감소/증가 원인을 서술해야 함

A6.4-FORM-A-C-021

MONITORING REPORT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Monitoring report version number	++		
Monitoring report completion date	++		
Monitoring period:	Start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End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Participating Parties and authorized activity participants:	++		
PDD version number applicable to this monitoring report	++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achieved in this monitoring period (RCU _{aj})	++		

Version 01.0 Page 1 of 18

A6.4-FORM-A-C-021

SECTION E. Calculation of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E.1. Calculation of ex post baseline emissions/removals

E.2. Calculation of ex post project emissions/removals

E.3. Calculation of ex post leakage emissions

E.4. Calculation of ex post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E.5. Summary of ex post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Monitoring Period	Baseline emissions or removals (RCU _{aj})	Project emissions or removals (RCU _{aj})	Leakage emissions or net removals (RCU _{aj})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RCU _{aj})
Start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End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E.6. Comparison of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achieved with estimates in the registered PDD

Amount achieved during this monitoring period (RCU _{aj})	Amount estimated ex ante for this monitoring period in the PDD (RCU _{aj})

E.6.1. Explanation of calculation of "amount estimated ex ante for this monitoring period in the PDD"

E.6.2. Remarks on increase in achieved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Version 01.0 Page 5 of 18

A6.4-FORM-A-C-021

SECTION F. Continuous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Copy this table for each comment)

Submitter of comment	Date of receipt of comment	How comment was received	Link to comment (if relevant)	Summary of comment	Summary of how the comment was addressed
++	++	++	++	++	++

☐ I intend to verify that the reported GHG emission reductions or net GHG removals being requested for issuance of A6.4ERs are not overlapping with any of the GHG emission reductions or net GHG removals regarding which credits have been or are intended to be requested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or sectoral GHG mitigation crediting scheme.

☐ In order to acknowledge that double issuance is avoided, the verification by the DOE will result in a negative verification opinion. The reason for issuance will be related to the Supervisory Body, in the period of double issuance will be deducted from future issuance of A6.4ERs for the same A6.4 project if the requested A6.4ERs have already been issued.

Version 01.0 Page 6 of 18

3 검·인증(Verification) 사업자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검증기관을 통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했듯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가요? 어떤 검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비용과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요!

네, 6.2조 및 6.4조 사업자 모두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할 검증기관(6.2조) 또는 DOE(6.4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상이한 비용,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증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 또는 DOE는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와 검증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검증기관 선정

6.4

6.4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DOE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SB에서 지정한 DOE 중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기준, 기관별 비용, 검증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DOE를 선정해야 합니다.

기관 선정 시 검·인증 대상 사업의 분야와 검·인증 분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 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타당성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DOE를 선정해야 합니다.

<표 8> 6.4조 메커니즘 DOE 승인 현황

Ref. Number	Accredited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
A6.4E-0007	• A6.4 DOE: KBS Certification Services Ltd.
A6.4E-0005	• A6.4 DOE: Earthood Services Private Limited
A6.4E-0004	• A6.4 DOE: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A6.4E-0003	• A6.4 DOE: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Co., Ltd.
A6.4E-0002	• A6.4 DOE: SustainCERT S.A
A6.4E-0001	• A6.4 DOE: Carbon Check (India) Private Limited

※ 출처 :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article-6/article-64-pacm/accreditation#AE-DOE>

6.2

6.2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검증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선정한 검증기관은 CDM 운영기구에서 승인한 DOE,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서 승인한 DOE, 양자협정에 명시되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DOE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검증

사업자가 선정한 검증기관 또는 DOE는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증기관 또는 DOE는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와 검증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의 이행,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사업이 활동 표준 및 기타 규칙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2조 사업의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마련된 양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6.4조 사업의 경우 UNFCCC에서 마련한 양식(A6.4-FORM-AC-023)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파리협정 6.4조 검증 양식(A6.4-FORM-AC-023):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6.4-FORM-AC-023.pdf>

검증 과정에서 사업자는 검증기관 또는 DOE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

참고 현장 검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6.4조 사업

-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DOE의 첫 번째 검증일 경우 현장 검증이 의무임
- ☑ 해당 사업의 검증을 위해 실시한 현장 검증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이 의무임
- ☑ 해당 사업의 현장 검증을 실시한 마지막 검증 이후 300,000tCO₂eq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순제거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의무임



자주하는 질문



검증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증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할 경우, 발행될 감축실적에 영향이 있을까요?

검증은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제거량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검증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감축실적의 발행이나 국제 이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인 활용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검증기관이 감축량 산정 결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감축실적 발행이 제한되거나 조건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감축량을 평가하므로, 모니터링 기록이나 보고서, 운영자료 등 충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검증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요?

검증은 사업 진행 단계와 보고 주기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중 정기적 혹은 연 단위로 검증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4조 사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전 검증은 필수이므로 발급 일정에 맞춰 검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마 감축실적 발행 및 이전

- ✓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6.4조 사업은 DOE가 UNFCCC 사무국에, 6.2조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공동 위원회에 감축실적 발행을 신청함. 이후 신청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실적이 발행됨
- ✓ 6.2조 사업의 경우, 감축실적은 유치국 정부 레지스트리에 ITMOs로 발행된 후 한국 정부로 이전됨

1 감축실적 발행 신청



검증을 통해 우리 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까지 완성되었어요! 이제 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실적을 발행받아야 할 것 같아요. 6.2조 사업과 6.4조 사업의 감축실적 발행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6.4조 사업의 경우, DOE가 6.4조 사업에 대한 A6.4ERs 발행요청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납부, 발행신청 건에 대한 사무국의 검토·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6.2조 사업자는 공동위원회에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합니다.



(1) 발행요청

6.4

DOE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UNFCCC 사무국에 A6.4ERs 발행요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는 수수료 납부, UNFCCC 사무국의 완전성검토, 실질점검 대응, 수수료 차액 정산을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6.2

사업자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감축실적 발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감축실적은 모니터링 보고서가 검증기관에 의해 확인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등록 직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최소 1개 이상의 모니터링 주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발행 신청이 반려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모니터링 데이터 불충분, 검증 범위 불일치, 문서 간 감축량 불일치, 유치국 승인 미비 등이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2 신청내역 검토



감축실적 발행 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나요?

6.4조 사업의 경우, 신청사업에 대한 완전성 검토, 실질점검이 이루어지며, 검토가 완료되어 '발행'으로 결정된 경우 6.4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상 사업자 계정에 A6.4ERs를 발행합니다.

6.2조 사업의 경우 공동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감축실적 발행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적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유치국 정부에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적 발행 및 이전을 요청합니다.



6.4

사무국은 완전성 검토 중 일부 문제를 확인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DOE와 사업자에게 보완 및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OE는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발행 신청은 반려됩니다.

사무국은 DOE에 완전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완전성 검토 결과를 UNFCCC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완전성 검토 결과가 통과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SB 지침에 따라 21일 이내에 발행 요청에 대한 실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질점검 결과 역시 UNFCCC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이때 발행요청서는 SB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무국은 SB가 A6.4ERs 발행 요청을 접수하였음을 사업참여자, DOE, 유치국 및 기타 참여국의 DNA에 통보하게 됩니다. 유치국 및 기타 참여국, SB는 UNFCCC 홈페이지를 통해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고, 발행요청서가 공표된 날로부터 28일 이내 발행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A6.4ERs 발행에 대해 유치국 및 참여국, SB 검토의견에 대해 28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참여자 및 DOE가 제출한 대응 의견들은 전문가 검토팀에 의해 평가되며, 검토팀은 검토 개시 후 14일 이내 결정안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을 통해 SB에 제출하게 됩니다.

SB는 회의를 통해 검토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사무국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발행을 결정합니다. SB는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관리자에게 최종 결정된 A6.4ERs 수량을 레지스트리의 Pending 계정으로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사무국은 사업자와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관리자에게 SB 결정사항을 통보한 후 UNFCCC 홈페이지에 현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후 메커니즘 레지스트리에서 사업자의 계정에 A6.4ERs가 발행됩니다.

6.2 정부

공동위원회는 실적발행 신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발행 신청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실적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유치국 정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축실적 발행 및 이전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감축실적 발행 및 이전



감축실적 발행 신청 건에 대한 검토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남은 것은 감축실적의 발행과 이전이겠네요!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적이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6.2조 사업의 경우, 유치국 정부는 공동위원회 요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검증받은 감축량 또는 제거량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고, 유치국은 국가등록부에 ITMOs로 승인한 감축실적의 총량을 기록하고, 우리나라에 이전하게 됩니다!
사업참여자와 우리나라 정부가 유치국으로부터 발행확인서를 받게 되면, 우리 정부는 등록부에 유치국 등록부로부터 이전받은 ITMOs 양과 동일한 양을 기록합니다.



6.2

유치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축실적 발행 및 이전 요청이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ITMOs로 승인된 감축실적의 총량을 레지스트리에 기록하고 ITMOs를 한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감축실적으로 검증받은 감축량을 발행하였다는 발행인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인증서를 수신한 후, 한국 정부는 국가등록부에 사업 유치국의 등록부로부터 이전받은 ITMOs의 양과 동일한 양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상응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상응조정은 감축실적이 이중 계산(Double Counting)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회계 장치입니다. 감축실적이 “누구의 기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가 스스로 감축실적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절차 없이는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행된 실적을 쓰지 않고 보유(Hold/Banking)만 해도 되나요?

네. 감축실적은 발행 후 즉시 이전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이동 없이 “Account Balance” 상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감축실적의 유효기간(Validity Period)을 설정하고 있으며, 장기간 보유할 경우 상응조정 여부나 회계연도 반영 기준(예: 2030 NDC만 활용)에 따라 활용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사항

- ❑ 파리협정 6조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의 자금조달·타당성 검토부터 승인, MRV, 감축실적 발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핵심 리스크가 존재
- ❑ 각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수립 미흡·타당성 부족, 유치국의 사업승인 미획득·감축실적의 불인정 등은 파리협정 6조 사업 지연과 실패로 직결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

(1) 타당성조사 단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사항은 6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 부족, 유치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미흡입니다.

사업자가 6조 메커니즘의 성격, 승인 절차, 회계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설계하거나 추진할 경우, 사업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방법론을 선정하거나 인증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계획과 실행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나 운영비를 부정확하게 산정하거나, 자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비용·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자나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치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미확보도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파리협정 6조 사업은 유치국 정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핵심적인 사업 특성을 갖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유치국 정부의 비협조가 발생할 경우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며, 승인 지연이나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맵핑, 현지 파트너십 구축, 정부와의 초기 소통 전략 수립 등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설계와 실행 계획의 부적합, 정치적·환경적·사회적 리스크 관리 부족 등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로,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 전력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전승인 단계

사전승인 단계에서는 기술·경제성 분석의 미흡, 운영 및 계측 데이터의 부족, 그리고 유치국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성 이슈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 및 경제성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상 기술의 현지 적용성, 예상 성능, 유지보수 체계, 고장률 및 운영 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경우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산정의 부정확성으로 이어져 사업자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자료와 프로젝트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계측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감축량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기관이 사업의 환경적 성과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국의 정책·제도 변화 역시 추가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치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발표하거나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에 추가적이라고 평가되던 사업 활동이 더 이상 추가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사전승인 단계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사업 구조의 재검토나 방법론 조정이 필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승인 및 등록 단계

파리협정 6조 사업은 유치국 정부의 공식 허가서(LoA) 발급을 전제로 하므로, 승인 지연이나 미획득은 곧 사업 추진 일정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유치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 변화는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치가 해당 사업이 자국의 NDC 이행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 정책·전략과 충돌한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일정의 장기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승인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유치국 정부 내 부처 간 조율 미흡, 지방정부와의 협력 부족, 민간 파트너 간 역할·책임 조정 실패 등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며 승인기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 부족은 승인 거부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 요청, 사업 구조 조정 요구 등으로 이어져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ITMO 이전과 관련한 협상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응조정 방식, 최초이전 시점과 조건, 수익 배분 구조 등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자국의 회계·보고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 보류 또는 추가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2조 협력적 접근법의 투명성과 견고한 회계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승인 지연 요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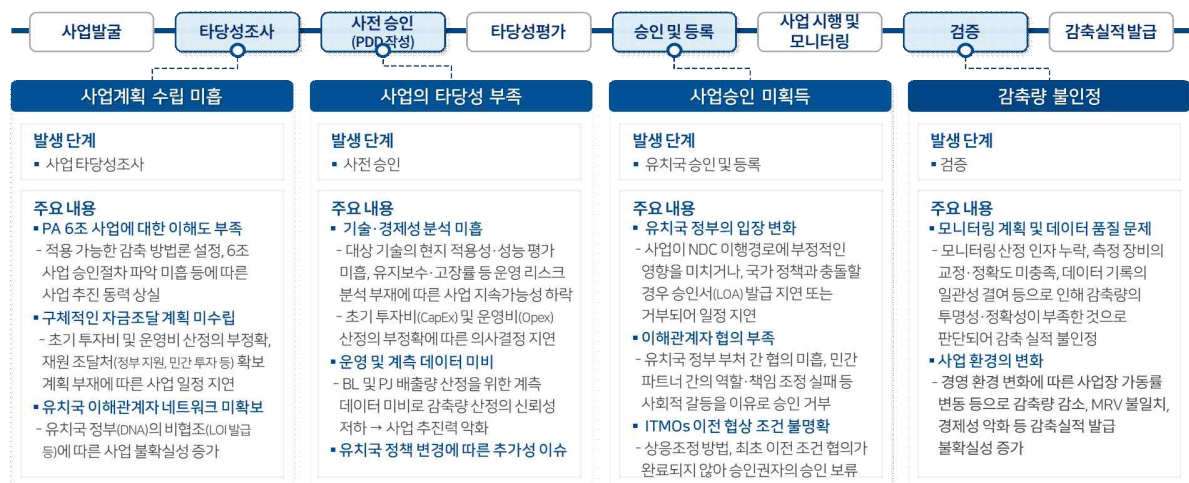
(4) 검증 단계

검증 단계에서는 감축량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납니다. 특히 모니터링 계획의 부실과 데이터 품질 문제는 감축량 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산정 인자가 누락되거나, 측정 장비의 교정 정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 기록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검증 기관은 보고된 감축실적이 방법론 요구사항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신뢰성 저하는 감축량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며, 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환경의 변화 역시 검증 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상의 변화, 원자재 수급 문제, 설비 유지보수 이슈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가동률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실제 감축량이 초기 계획 대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RV 체계와 현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검증기관이 감축 실적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이는 감축실적 발급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검증 단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정 및 데이터 품질 관리, 모니터링 체계 점검,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모니터링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가 검증 단계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7]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사항



CHAPTER

4

사업 유형별 필요양식

01. 파리협정 제6.2조

02. 파리협정 제6.4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대상국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 제출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관련 서류						

2)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자**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		
사업 개요	사업명	· 영문명:
		· 국문명:
	사업 대상국	
	사업 수행자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적용 방법 론	적용 방법론	· 방법론 명:
		· 방법론 버전: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	
온실 가스 감축 량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q/년)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2. 사업대상국(위치)

국가	
지역/주/도 등	
시/군/구 등	
위도, 경도	

1.3. 국제감축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구 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 ₂ -eq	%
사업자 1			
사업자 2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	년 월 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2.1. 적용 방법론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2.3.1. 사업경계

2.3.2.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배출원		온실가스	포함여부	배출원 설명
베이스라인 배출량	배출원 1	CO ₂		
		CH ₄		
		N ₂ O		
		...		
	배출원 2	CO ₂		
		CH ₄		
		N ₂ O		
		...		
사업 배출량	배출원 1	CO ₂		
		CH ₄		
		N ₂ O		
		...		
	배출원 2	CO ₂		
		CH ₄		
		N ₂ O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5. 추가성 입증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3.3. 누출량 산정식

3.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데이터 단위	
설명	
데이터 출처	
적용된 값	
측정 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구분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tCO ₂ -eq)	사업 배출량 (흡수량) (tCO ₂ -eq)	누출량 (tCO ₂ -eq)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tCO ₂ -eq)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				
총 예상 감축량				
총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평균 감축량				

4.모니터링 계획

4.1. 베이스라인 변동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데이터 단위	
설명	
데이터 출처	
적용된 값	
측정 절차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5. 참고자료

※ (필요시) 감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국의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각각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증빙자료 포함)

1) 사전고려 양식 사업자

...

Article 6.4 Mechanism

Prior consideration notification form for projects (A6.4-FORM-AC-002) V01.0

Activity participants of a proposed A6.4 project shall demonstrate the consideration of Article 6.4 mechanism benefits in the decision to implement the project by submitting a "prior consideratio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iat via this dedicated interface in line with applicable **deadlines** as per the **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

이 양식을 제출하면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이름 및 전자 메일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 필수

1. Project Title *

답변을 입력하세요.

2. Names of the activity participants *

답변을 입력하세요.

3. Host party *

답변 선택 ▼

4. Precise geographical location (Full address or GPS coordinates) *

답변을 입력하세요.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rRJskmpAM0-2hveP9YliClwaFEo06KJEojmwXUiFg35UOFJIUDdTSVhSMUdXVEZMV0VLWFFQVTBNQy4u&route=shorturl>

2) 사업계획서(Project Design Document) **사업자**

A6.4-FORM-AC-020

 PROJECT DESIGN DOCUMENT (PDD)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Host Party:	Choose a Party.		
Other participating Parties:	Choose a Party.		
Activity participant(s): (add rows if needed)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y that is to provide authoriz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PDD version number:	>>		
PDD completion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s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Sectoral scope(s):	>>		
Type of the project:	☐ Emission reductions activity ☐ Removals activity ☐ Combined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s activity		
Estimated annual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over the crediting period (tCO ₂ e/year):	>>		

3)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양식 **사업자**

A6.4-FORM-AC-026

 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PDD SUBMISSION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DETAILS OF THE A6.4 PROJECT AND THE ACTIVITY PARTICIPANT	
Project title	>> <i>Provide the title of the proposed project</i>
UNFCCC reference number:	>> <i>Provide the UNFCCC unique reference number for the proposed project received after publishing the notification of prior consideration</i>
Version number of the PDD:	>> <i>Provide the version number of the PDD being submitted for 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i>
Date of the version of the PDD:	Enter a date.
Contact details of the activity participant submitting the PDD:	Organization name: >> <i>Provide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that has the role of activity participant</i>
	Country: Choose a Party.
	Address: >> <i>Provide the address of the activity participant</i>
	Telephone: >> <i>Provide the telephone of the activity participant with country code</i>
	Mobile (optional): >> <i>Provide the mobile phone of the activity participant with country code</i>
	E-mail: >> <i>Provide the e-mail address of the activity participant</i>
	Website: >> <i>Provide the website of the activity participant</i>
Confirmation of submission of the PDD for 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 I hereby confirm that the project design document (PDD) is attached and authorize its publication for 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on the UNFCCC website.
	Nam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activity participant: >> <i>Provide the person representing the activity participant</i>
	Date: Enter a date.
	Signature:

4)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사업자**

A6.4-FORM-AC-021

 MONITORING REPORT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Monitoring report version number:	>>		
Monitoring report completion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Monitoring period:	Start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End date: Click or tap to enter a date. Sequence number: >>		
Participating Parties and authorized activity participants: <i>(Add/remove rows as necessary)</i>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y(ies) that provided authoriz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PDD version number applicable to this monitoring report:	>>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s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Sectoral scope(s):	>>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achieved in this monitoring period (tCO ₂ e)	>>		

5) 타당성평가 보고서 양식

A6.4-FORM-AC-022

 VALIDATION REPORT FORM FOR ARTICLE 6.4 PROJECTS (Version 01.0)			
BASIC INFORMATION			
Project title:	>>		
UNFCCC project reference number:	>>		
Version number of the PDD to which this validation report applies:	>>		
Participating Parties and activity participant(s):	Type of Party	Name of activity participant(s)	Party that provided authorization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Choose a type of Party.	>>	Choose a Party.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and their versions:	>>		
Sectoral scope(s):	>>		
Estimated annual emission reductions or net removals over the crediting period (tCO ₂ e/year):	>>		
BASIC INFORMATION OF THE VALIDATION REPORT			
Version number and date of completion of the validation report:	Version number: >>		
	Date of completion: Enter a date.		
Name and UNFCCC reference number of the DOE:	>>		
Name, position and signature of the approver of the validation report:	>>		

CHAPTER

5

부 록

- 01.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내 법률
- 02.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지침
- 03.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부 지원 현황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 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 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국제 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이 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자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소멸 시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부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2.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3.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⑦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8조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사업의 내용·기관과 참여자
 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 방법 및 근거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회의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검증 가능성
 2.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방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적절성
 3.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가능성
-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의 개정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감축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①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국제감축심의회는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제감축심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심의회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 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사업 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으로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2.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호 외의 사유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 취득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협정의 부속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 한다)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
 - 나.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
 - 다. 그 밖에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2. "국제감축 지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제감축 투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제감축 구매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감축실적"이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을 말한다.
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국제감축심의회"란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 "국제감축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9.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타당성평가"란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
11. "모니터링"이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ISO 14065 인증 기관
 - 나. UNFCCC 지정 기관
 - 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
14. "국제감축등록부"란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

15. "계정"이란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 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7. "보유계정"이란 정부 및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8. "취소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18. "정부보유계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19. "처분계정"이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 "국외 이전"이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를 포함한다.
23.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축산·식품 분야
 - 나. 산업통상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 분야
 - 라.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해운·항만은 제외한다)·건설 분야
 - 마.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 바. 산림청 : 임업 분야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국제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등록 관리

제5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국제감축사업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의 세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전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국제감축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에게 취소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시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국제감축등록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시작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그 보고서에 관한 사항

-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감축협약체,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직권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보완·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보완·수정된 등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감축실적의 취득·거래·이전 등의 신고 및 등록

제7조(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신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국제감축실적과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감축실적의 거래 신고) ①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이 경우 국제감축협약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또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
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제10조(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 가.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나.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국제감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감축실적의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정부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처분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수행

제12조(국제감축협의회) ① 정부는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
2.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취소
3.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 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4.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5.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6.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제감축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외국정부와 협의에 따른다.

제13조(국제감축사업의 수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국내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감축협의회체의 승인 등) ① 정부는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 사업에 대하여 국제감축협의회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 사업을 국제감축협의회체가 승인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역할분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개정
3.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 및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
2.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 관리
3. 국제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서류 검토
4.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 접수 및 국내 최초이전 사전 승인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
2.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3.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실적의 국내 최초 이전 이외의 국내 이전 및 해외 이전 승인
2. 국제감축실적의 처분, 거래, 소멸 등에 관한 이력 관리
3. 국제감축등록부의 운영, 통계 작성 및 관리

제16조(비밀 준수)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1. 「해외건설촉진법」제28조2항에 따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9조(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국제감축협의체를 운영하는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와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국제감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① 사업수행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분할한 경우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는 해당 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사항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다.
- ③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감축실적을 발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에서 조정한다.

부 칙 <제2022-123호. 2023.0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감축등록부에 관한 경과규정) 영 제35조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가 구축되기 이전에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변경 신청, 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 신고, 감축실적의 이전 사전승인 신청 등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이 지침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정개발체제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전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UNFCCC 사무국 및 청정개발체제 시행국가에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전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청정개발체제 시행국가로부터 전환 승인을 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정개발체제 시행국가에서 발행한 국제감축사업 전환 승인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정부는 제26차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수행한 청정개발체제에서 발생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제4조(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승인서(Letter of Approval)와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관련 절차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2/CMA.3 Annex 협정 제6조 2항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 및 제3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OP26/CMA3)에서 채택된 결정문 2/CMA.3은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른 협력적 접근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지침입니다. 이 결정문의 부속서는 ITMOs의 생성, 이전에 필요한 규칙, 양식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정보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명시된 투명성 체계에 따라 구조화된 요약 형태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6.2조 협력적 접근방식의 핵심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환경건전성의 보장, 거버넌스를 포함한 투명성의 유지 그리고, 감축실적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하고 견고한 회계의 적용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부속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개별 당사국들은 참여하는 협력적 접근방식이 이러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CMA.3 부속서는 단순한 기술적 규칙서가 아니라, 파리협정의 근본적인 원칙인 환경건전성, 지속가능한 개발, 투명성, 그리고 이중계상 방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개별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운영 지침, 즉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규범적 목표, 즉 '왜 할 것인가'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단순히 ITMOs 이전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원칙들을 명백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접근법을 설계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s)

1. 협력적 접근법에서 발생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성과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실제적, 검증 가능, 추가적일 것
 - (b) 적응 조치 및/또는 경제다각화 계획에서 비롯된 감축 공편익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일 것
 - (c) 참여 당사국의 NDC와 일관되게 결정된 비-온실가스(non-GHG) 지표 또는 IPCC에서 평가하고 CMA가 채택한 방법론과 지표에 따라 tCO₂eq 단위로 측정될 것
 - (d) 제6.2조에 언급된 협력적 접근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6.3조에 따라 NDC 달성을 위한 사용이 승인된 감축 성과의 국제이전이 포함될 것

- (e) 2021년 이후 발생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감축성과일 것
 (f) 국제적 감축 목적 또는 최초 이전하는 당사국이 정한 기타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승인된 감축성과일 것
 (g) 6.4조 메커니즘에 따라 발행된 감축성과도 NDC 달성 또는 기타 국제적 감축 목적을 위해 승인된 경우에는 ITMO로 간주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결과물은 당사국 간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완화활동의 정량화 가능한 결과, 즉 성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의 핵심적인 ‘통화’ 역할을 합니다. 결정문 2/CMA.3 부속서 제1장 1항에 따르면, ITMOs는 여러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 ITMOs의 주요 특성

구분	주요내용
실제적, 검증 가능, 추가적	ITMOs 실제적이며,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협력적 접근법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배출 감소 또는 제거여야 함.
배출 감소 및 제거	온실가스 배출감소 또는 제거를 나타내며, 적응 활동 또는 경제 다각화 계획에서 발생하는 감축공편익을 포함할 수 있음
측정단위	주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측정되나, NDC와 일관될 경우 다른 비온실가스 지표도 가능
발생원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른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 발생해야 함
생성시점	2021년 이후의 완화를 나타내거나 그와 관련하여 생성되어야 함
사용 승인	- 참여 당사국에 의해 NDC 달성 또는 기타 국제 완화 목적을 위해 사용이 승인되어야 함 - 제6.4조 감축실적을 포함

2. 최초 이전(first transfer)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 (a) NDC 달성을 위한 감축 성과의 최초 국제이전
 (b) 기타 국제 감축 목적¹⁾을 위한 경우, (1) 승인, (2) 발행, (3) 사용 또는 취소 중 참여 당사국이 지정한 시점

1장에서는 ITMO의 최초 이전(First Transfer)에 대한 개념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전은 ITMOs의 회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NDC 달성을 위해 사용이 승인된 완화 성과의 경우, 최초 이전은 해당 성과의 첫 국제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기타 국제 완화 목적을 위해 승인된 감축 실적의 경우, 최초 이전은 참여 당사국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적의 승인, 발행, 사용 또는 취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 파리협정 당사국의 NDC 달성 이외의 용도로 감축 결과물(ITMO)을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따른 의무 이행이나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의 기업 사회적 책임(CSR) 이행, 기후 금융 목적의 실적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함.

파리협정 제6.2조는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이는 중앙집중화된 6.4조 메커니즘과 대조됩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법은 단순히 감축실적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참여 당사국들에게 상당한 행정 및 기술 역량 개발을 요구합니다. 당사국들은 ITMOs 발생, 이전 및 사용이 견고하도록 적절한 제도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ITMOs가 '실제적, 검증 가능하며 추가적'이어야 한다는 정의와 '행정 및 기술 역량,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언급은 참여 당사국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단위를 이전하는 것을 넘어 측정, 보고 및 검증(MRV), 승인, 추적을 위한 견고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속서는 ITMOs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 당사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성숙도를 암묵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ITMOs가 국제적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미 국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후단에서 설명할 부속서 제4장에 언급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제6.2조 참여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제6.2조의 성공은 감축 실적 취득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전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참여 당사국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 참여

3. ITMO 사용을 포함한 협력적 접근방식에 참여하는 각 당사국은 이 지침 및 관련 CMA 결정과 일치하게 참여, 승인, 이전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이 지침을 모든 상응조정 및 협력적 접근법에 적용해야 한다.
4. 각 참여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파리협정 당사국일 것
 - (b) 제4.2조에 따라 NDC를 수립, 제출, 유지할 것
 - (c) 제6.3조에 따라 NDC 달성을 위한 ITMO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 마련
 - (d) ITMO 추적을 위한 지침 및 CMA 결정과 일치하는 절차 마련
 - (e) 결정문 18/CMA.1에 따라 요구되는 최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제출
 - (f) NDC 및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TS)의 이행, 파리협정의 장기목표 이행에 기여할 것
5. 최빈개도국 및 소도서 개발국의 경우, 제4.6조에 따라 NDC 관련 특수 상황을 인정받고, 기타 특수상황은 향후 CMA 결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

결정문 부속서의 3조는 협력적 접근법에 참여하는 국가의 필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이어야 하며, NDC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DC 달성을 위한 ITMOs 사용 승인 체계, ITMOs 추적을 위한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ITMOs 회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신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파리협정의 전지구적 목표와 연계하기 위해 개별 당사국의 NDC, LTS 그리고 파리협정의 전반적인 장기 목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에서는 파리협정 4.6조에 따라 NDC와 관련된 조항에서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특별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별한 상황의 다른 측면은 향후 CMA 결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III.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A. ITMO 지표

6. 모든 ITMO(비-GHG 지표 포함)에 대해, 각 참여 당사국은 본 지침 및 향후 CMA 결정과 일관되게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B. 상응조정 적용 방식

7. 각 참여 당사국은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며, 협력적 접근법이 NDC 이행기간 내외 또는 당사국 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상응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a) 단년도 NDC를 가진 경우:

(i) NDC 달성과 이행에 일치하는 다년도 배출경로 또는 예산을 제시하고 매년 최초 양도 및 사용된 ITMO 총량에 대해 상응조정 적용

(ii) 누적 ITMO 총량을 경과 연수로 나눈 연평균값으로 연도별 상응조정 적용, NDC 해당연도에도 동일한 평균 적용

(b) 다년도 NDC를 가진 경우: NDC 이행기간에 일치하는 다년도 배출경로 또는 예산을 산정하고 매년 ITMO 최초 양도 및 사용 총량에 대해 상응조정 적용

8. tCO₂eq 기준의 NDC를 가진 당사국은 위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응조정을 적용해 연도별 배출균형(emission balance)을 산정해야 한다:

(a) 해당 감축성과가 발생한 연도에 승인 및 최초 양도된 ITMO 수량을 추가

(b) 감축성과가 NDC 달성에 사용된 연도에 해당 ITMO 수량을 차감

상응조정은 모든 ITMOs에 대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핵심 회계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ITMOs의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응조정의 주요 목적은 국가별 NDC 이행 현황을 추적할 때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NDC 이행 기간 내 또는 기간 간 참여 당사국 전체의 순배출량 증가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건전성을 유지하고 이중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응조정 방법은 NDC가 단년도 목표인지, 다년도 목표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년도 NDC인 경우, 매년 NDC 이행 기간 동안 해당 연도에 최초 이전 및 사용된 총

ITMOs에 대해 상응조정을 적용하거나, NDC 이행기간 동안 최초 이전 및 사용된 ITMOs의 누적치를 경과 연수로 나누어 연평균량을 계산하고 NDC 이행기간 동안 이 연평균량을 매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DC 지표에 따라서도 상응조정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tCO₂eq로 측정되는 NDC의 경우, NDC에 포함된 부문 및 온실가스에 대한 인위적 배출원 및 흡수원 제거량에 상응조정을 적용합니다. 감축실적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승인되고 최초 이전된 ITMOs의 양을 추가합니다. NDC 이행 및 달성을 위해 사용된 ITMOs의 양을 사용된 해당 연도에 차감하며, 이는 ITMOs가 발생한 NDC 이행 기간 내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표 12〉 NDC 유형별 상응조정 적용 방법

NDC 유형	주요내용
단년도 NDC	• 옵션 1: NDC 이행에 부합하는 지표적 단년 배출량 경로 및 예산 제공, 매년 최초 이전 및 사용된 ITMOs 총량에 대해 상응조정 적용 • 옵션 2: NDC 기간 동안 ITMOs 연평균량 계산, 매년 및 NDC 연도에 이 평균과 동일한 지표적 상응조정을 적용
다년도 NDC	• NDC와 일관된 다년도 배출 경로/예산 산정, 매년 최초 이전 및 사용된 ITMOs 총량에 대해 상응조정을 적용
tCO ₂ eq로 측정된 NDC	• 발생 연도에 최초 이전된 ITMOs 추가, 사용연도에 NDC에 사용된 ITMOs 차감

각 참여 당사국은 협력 접근 방식의 사용이 NDC 이행 기간 내 및 기간 간에 참여 당사국 전체의 순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진행 상황 추적에 있어 투명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및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CMA의 추가 지침에 명시된 보호 조치 및 한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NDC 달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기타 국제 완화 목적으로 승인된 ITMOs가 추가로 이전되거나, 취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상응조정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 특히 단년도 NDC에 대한 옵션과 다년도 NDC에 대한 누적 조정은 정교한 산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ITMOs를 다년간 추적하고 NDC 목표와 조정할 수 있는 견고한 국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배출량 ‘누출’이나 기간 간 회계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NDC 기간 전반에 걸쳐 일관된 방법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당사국들이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상당한 기술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나 3/CMA.3 Annex 6.4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

I. 제6.4조 활동 주기

□ 활동 설계

(중간생략)

30. 6조 4항 활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하 '활동 참여자')은 본 장의 요구사항 및 CMA 또는 감독기구가 채택한 기타 관련 요건에 따라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31. 해당 활동은:

- (a)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배출 감축, 흡수 증진, 적응조치 및/또는 경제다각화 계획의 감축 공동편익(이하 통칭하여 '배출 감축')이 포함되며, 전지구적 배출량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 (b)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또는 감독기구가 승인한 기타 유형의 활동일 수 있다.
- (c) 유치국 내에서 감축성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d) 또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i) 결정문 1/CP.21 37(b)항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적인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 (ii) 여러 NDC 이행 기간에 걸쳐 배출 감축의 비영속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역전 발생 시 이를 완전히 대응해야 한다.
 - (iii) 누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남아있는 누출에 대해 감축 또는 흡수 산정 시 보정해야 한다.
 - (iv) 부정적인 환경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회피해야 한다.
- (e) 공공참여 및 지역사회, 원주민과 관련된 국내 체계와 일치하도록 역 및 (필요시) 하위국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f) A6.4ER 발행을 위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최대 2회 갱신 가능) 또는 10년(갱신 불가) 중 해당 활동에 적합한 기간으로 하며, 흡수를 포함한 활동은 최대 15년(최대 2회 갱신 가능)까지 가능하다. 모든 경우 감독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치국이 위 27(b)항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1년 이전에 시작될 수 없다.

32. 해당 활동은 아래 V.B장(방법론)에 따라 개발되고 감독기구의 기술평가 및 승인을 받은 메커니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활동을 통해 달성할 감축량 산정을 위한 베이스라인 설정
- (b) 해당 활동의 추가성을 입증
- (c) 감축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보장
- (d) 활동을 통해 달성된 감축량을 산정

제6.4조 활동으로 등록하려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활동 참여자)은 CMA 및 감독기구가 채택한 요건에 따라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활동은 반드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배출 감축, 흡수 증진, 적응조치, 경제 다각화 계획에서 발생하는 공동편익 등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은 전지구적 배출량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활동 유형은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혹은 감독기구가 승인한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치국 내에서 감축성고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장기적 편익 제공 △비영속성 위험 최소화 및 역전 발생 시 대응 △누출 위험 최소화 및 보정 △환경적·사회적 부정영향 최소화·회피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공참여 및 지역사회·원주민과의 협의를 포함한 국내 체계와 일치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6.4ER 발행을 위한 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최대 2회 갱신 가능) 또는 10년(갱신 불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흡수 활동은 최대 15년(최대 2회 갱신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 감독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치국이 더 짧은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인증 유효기간은 2021년 이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은 반드시 감독기구가 승인한 메커니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베이스라인 설정 △추가성 입증 △정확한 모니터링 △달성된 감축량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방법론

34. 메커니즘 방법론은 관련된 가정, 매개변수, 데이터 출처 및 주요 요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불확실성, 누출, 정책 및 조치, 그리고 국가적·지역적·지방적,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여건을 반영하고, 해당되는 경우 역전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35. 메커니즘 방법론은 활동 참여자, 유치국, 이해관계자 또는 감독기구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메커니즘 방법론은 본 규칙·방침 및 절차와 감독기구가 추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각 메커니즘 방법론은 감독기구의 지침을 반영하여 아래 제시된 접근법 중 하나를 베이스라인 설정에 적용해야 하며, 제안된 베이스라인 접근법이 위 33, 35항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유치국이 자율적으로 보다 의욕을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택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 (a) 성과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
 - (i) 적절한 경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최적가용기법(BAT)
 - (ii) 유사한 사회·경제·환경·기술 여건 내에서 유사한 산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중 가장 성과가 좋은 활동들의 평균 배출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야심찬 벤치마크 접근법

(iii) 기존 실제 또는 과거 배출량에 기반하되, 위 33항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된 접근법

37. 표준화된 방법론은 유치국의 요청에 따라 감독기구가 개발하거나 유치국이 개발하여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은 유치국의 해당 부문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집계 단위로 설정되며, 위 33항과 일치해야 한다.

38. 각 메커니즘 방법론은 해당 활동의 추가성을 입증하는 접근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추가성은, 해당 활동이 메커니즘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력한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국가 정책과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감축을 초과하는 감축임을 보여야 하며, 위 33항에 부합하지 않는 배출 수준, 기술 또는 탄소집약적 관행의 고착화를 피하는 보수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39. 감독기구는 최빈개도국 또는 군소도서개발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감독기구가 마련한 요건에 따라 추가성 입증을 위해 단순화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메커니즘 방법론은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감축성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매개변수·데이터 출처·주요 요인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성·누출·정책·국가 및 지역적 사회경제·기술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속성(역전) 문제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방법론은 활동 참여자, 유치국, 이해관계자 또는 감독기구가 직접 개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 규칙·방식·절차와 감독기구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특히, 베이스라인 설정은 다음 중 하나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제안자가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표 13〉 베이스라인 설정 접근법

구분	설명
성과 기반 접근법	최적가용기법(BAT)과 같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기술, 또는 유사한 여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활동들의 평균 배출량을 벤치마크로 활용
과거 배출량 기반 접근법	기존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하되, 보다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

이외에도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은 유치국의 요청 또는 주도로 개발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독기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부문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집계 단위로 설정됩니다.

추가성 입증 역시 필수 요건입니다. 활동은 메커니즘 인센티브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가 정책·법률·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감축이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집약적 관행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경우, 감독기구 요건에 따라 단순화된 추가성 입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승인(Approval) 및 허가(Authorization)

40. 유치국은 등록 신청에 앞서 활동에 대한 승인을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승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해당 활동이 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구체적 방법에 대한 정보
 - (b) 만약 유치국이 위 27(b)항에 따라 해당 6.4조 활동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했으며, 최초 인증 유효기간 이후에도 활동 연장을 승인할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인증 유효기간의 잠재적 갱신에 대한 승인
 - (c) 해당 활동이 당사국의 NDC 이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예상되는 감축량 또는 제거량이 유치국의 NDC 및 제6조 1항에 언급된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
41. 유치국은 감독기구에 제6조 4항 (b)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본 메커니즘 하의 활동 참여자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가함을 통보해야 한다.
42. 유치국은 감독기구에 해당 활동에서 발행된 A6.4ER이 NDC 달성 또는 결정문 2/CMA.3에서 정의한 기타 국제 감축목적(OIMP)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한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허가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기타 국제감축목적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A6.4ER의 “최초 이전” 정의가 결정문 2/CMA.3 부속서 2(b)항과 일치하도록 정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43. A6.4ER은 위 42항에 따라 허가된 경우에만 NDC 달성 또는 국제감축목적(IMP)에 사용될 수 있다. 유치국은 최초 이전되는 해당 A6.4ER에 대해 아래 IX장(둘 이상의 당사국의 감축 실적 중복 사용 방지) 및 X장(기타 국제감축목적을 위한 감축실적 사용)에 따라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하며, VII장(적응 및 행정비용을 위한 분담금 부과)에 따라 분담금이 부과된 A6.4ER 및 VII장(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달성)에 따라 취소된 A6.4ER에 대해서도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44. 유치국은 기타 목적을 위해 허가된 A6.4ER에 대해 X장(기타 국제감축 목적을 위한 감축실적 사용)에 따라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하며, VII장(적응 및 행정비용을 위한 분담금 부과)에 따라 분담금(SOP)이 부과된 A6.4ER 및 VIII장(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달성)에 따라 취소된 A6.4ER에 대해서도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45. 기타 참여 당사국들도 A6.4ER을 해당 당사국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메커니즘 등록부 계정으로 최초 이전하기 전에, 제6조 4항에 따라 해당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가한 내용을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국은 제6.4조 활동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활동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승인서에는 해당 활동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활동이 자국의 NDC 이행 및 파리협정 제6조 목적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국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활동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 사실을 감독기구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활동에서 발행된 A6.4ER은 유치국이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NDC 달성 목적이든, 기타 국제 감축목적이든, 혹은 기타 목적이든 반드시 유치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 내용은 감독기구에 서면 성명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감축목적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A6.4ER의 최초 이전 정의가 2/CMA.3 부속서 규정과 일치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치국은 A6.4ER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응조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SOP(적응 및 행정비용 분담금)가 부과된 A6.4ER이나 OMGE 달성을 위해 취소된 A6.4ER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 목적 사용의 경우에도 상응조정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국들도 자국의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음을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A6.4ER이 해당 당사국이나 기관의 등록부 계정으로 최초 이전되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타당성평가(Validation)

46. 지정운영기구(DOE)는 본 규칙·방식·절차와 CMA의 관련 추가 결정 및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에 따라 해당 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타당성평가라 한다.

타당성평가(Validation)란, 제6.4조 활동이 규칙과 절차, CMA의 관련 결정, 그리고 감독기구가 채택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DOE가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유치국이나 활동 참여자의 주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DOE가 해당 활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는 활동 등록 전 필수적으로 수행되며, 활동이 추가적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국제적으로 일관된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지, 환경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기여를 보장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타당성평가는 제6.4조 메커니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Registration)

47. 지정운영기구(DOE)가 타당성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며,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에 따라 검증 결과와 등록 신청서를 감독기구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8. 활동 참여자는 등록 신청 시, CMA가 활동의 예상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수준의 수익분담금을 행정비용 충당 목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49. 감독기구가 타당성평가 및 그 결과가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활동을 제6.4조 활동으로 등록한다.

DOE가 수행한 타당성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DOE는 검증 결과와 함께 등록 신청서를 감독기구에 제출합니다. 이는 활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부합한다는 독립적 검증을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등록 신청 과정에서, 활동 참여자는 CMA가 활동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일정 수준의 수익분담금(SOP)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충당에 활용됩니다.

이후 SB가 타당성평가 및 제출된 자료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활동은 정식으로 제6.4조 활동으로 등록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 활동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공식 활동으로 인정되며, 이후 감축실적(A6.4ER)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50. 활동 참여자는 각 모니터링 기간동안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에 따라 해당 활동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감독기구가 정하는 기간동안 잠재적 역전 가능성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제6.4조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활동 참여자는 SB가 채택한 요건에 따라, 각 모니터링 기간동안 활동을 통해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감축실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축실적의 역전 가능성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감독기구가 정한 기간 동안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후속 검증과 감축실적 발행 절차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51. 지정운영기구는 모니터링 기간동안 제6조 4항 활동의 이행 및 달성된 감축실적을 본 규칙·방식·절차와 CMA의 추가 결정, 감독기구 채택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이하 '검증')하고, 검증된 감축실적에 대해 서명으로 보증(이하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

DOE는 활동 참여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당 활동이 규칙·방식·절차 및 CMA의 관련 결정, 그리고 SB가 정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했는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검증이라 부릅니다.

검증 과정에서 DOE는 활동이 보고한 감축실적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불확실성과 누출, 역전 가능성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후 DOE는 검증을 통해 인정된 감축실적에 대해 공식적인 보증(인증)을 서명 형태로 제공합니다. 즉, 검증은 사실 확인 절차, 인증은 그 확인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서'로 확정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A6.4ER 발행의 전제 조건이 되며,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 발행(Issuance)

52. A6.4ER의 발행을 위해 지정운영기구는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에 따라 검증 결과와 인증을 첨부하여 감독기구에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53. 감독기구가 검인증 및 그 결과가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6.4ER의 발행을 승인한다.
54.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에 A6.4ER을 발행해야 한다.
55. 메커니즘 등록부는 V.C장(승인 및 인가)에 따라 NDC 달성 및/또는 기타 국제감축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A6.4ER을, 허가된 특정 용도를 포함하여 구분해야 한다.

DOE는 검증 및 인증 결과를 첨부하여 감독기구에 A6.4ER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감독기구가 해당 결과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발행을 승인하게 됩니다. 발행 승인이 이루어지면,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가 감독기구가 채택한 요건에 따라 A6.4ER을 등록부에 공식 발행합니다. 이때 등록부는 단순히 발행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A6.4ER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었는지(NDC 달성이용, 기타 국제감축목적, 기타 목적 등)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허가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인증 유효기간 갱신

56. 등록된 제6조 4항 활동의 인증 유효기간은, 위 27(b)항에 따라 유치국이 갱신을 승인한 경우, CMA의 추가 관련 결정 및 감독기구가 채택한 관련 요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57.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은 지정운영기구가 베이스라인, 추가성,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갱신 사항을 기술적으로 평가한 후, 감독기구와 유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 갱신(Renewal of crediting period)은 등록된 제6.4조 활동이 최초의 인증 유효기간을 넘어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유치국이 해당 활동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만 갱신 가능하며, 이는 CMA의 추가 결정과 감독기구가 마련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갱신 절차에서는 DOE가 활동의 베이스라인, 추가성,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다시 평가하여 최신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이 기술적 평가 결과는 감독기구와 유치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최종적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메커니즘 등록부에서의 최초 이전

58. 감축실적(A6.4ER)이 발행될 때,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발행된 A6.4ER 중 5%를 적응 기금(Adaptation Fund) 계정으로 최초 이전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적응 비용 충당을 지원한다.
59. 발행 시,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아래 VIII장(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달성)에 따라 발행된 A6.4ER 중 최소 2%를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달성을 위하여 취소용 계정으로 최초 이전하여 취소해야 한다.
60.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활동 참여자의 지시 및 CMA가 채택한 추가적 세부 절차와 감독기구가 정한 관련 요건에 따라, 발행된 나머지 A6.4ER을 최초 이전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메커니즘 등록부에서의 최초 이전은 발행된 A6.4ER이 처음으로 특정 계정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발행 직후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분배 절차를 의미합니다. 발행된 A6.4ER의 5%는 자동으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충당 목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6.4조 활동은 일정 비율의 성과를 적응 재원으로 환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된 A6.4ER의 최소 2%는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달성을 위해 별도의 취소 계정으로 이전되어 즉시 취소됩니다. 이는 메커니즘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전지구적 총배출량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외의 잔여 A6.4ER은 활동 참여자의 지시에 따라 최초 이전 또는 위임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CMA의 추가 절차와 감독기구의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자발적 취소

61. 활동 참여자는 본인의 제6조 4항 활동에 대해 발행된 A6.4ER 중 일부를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인에게 자발적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발적 취소란 활동 참여자가 자신에게 발행된 A6.4ER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등록부에서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분담금이나 전지구적 감축을 위한 취소와 달리, 활동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선택적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활동 참여자가 사회적 책임(CSR) 또는 추가적 환경 기여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자발적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발행받은 일부 A6.4ER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취소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 감축 기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6.4조 활동 관련 기타 절차

62. 이해관계자, 활동 참여자, 참여 당사국은 감독기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립적인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불만 사항이 처리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독기구의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이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자, 활동 참여자 및 참여 당사국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결정 과정에서 실수나 불공정성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감독기구는 독립적 불만 처리 절차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과 분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 조항은 6.4조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이고 모든 참여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Ⅶ. 적응 및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 분담금(SOP) 부과

66.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수익 분담금은 결정문 13/CMA.1과 1/CMP.14에 따라 적응기금으로 전달된다.

67.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수익 분담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A6.4ER 발행 시 5%의 할당금 부과

(b) 제6조 4항 활동의 규모 또는 발행된 A6.4ER 수량에 따라 감독기구가 결정한 금전적 기여금

(c) 메커니즘이 자체자금을 확보한 후에는, 아래 68항에 따라 행정비용에서 남은 자금 중 일부를 운영비와 예비비로 제외한 후 CMA가 정하는 수준과 주기에 따라 기여

68.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 분담금은 금액 기준으로 CMA가 정한 수준과 방법에 따라 부과되고 집행된다.

69.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계산된 A6.4ER의 강제적 취소를 통해 강화된다:

(a)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발행된 A6.4ER 중 최소 2%를 위 V장(제 6조 사항 활동주기)에 따라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계정으로 최초 이전하고 해당 A6.4ER을 취소한다.

(b) 취소된 A6.4ER은 NDC 달성, 기타 국제감축 목적 또는 다른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이전되지 않는다.

(c) 남은 A6.4ER 최초 이전 시 유치국은 결정문 2/CMA.3에 따라 해당 수량에 대한 상응조정을 실시한다.

70. 그 밖에, 당사국, 활동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는 결정문 2/CMA.3 III.B장에 따라 상응조정된 A6.4ER에 대해 추가적인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목적으로 메커니즘 등록부 내 자발적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메커니즘에서는 발행되는 감축실적(A6.4ER)의 일부를 SOP로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CDM에서 도입된 제도를 계승·강화한 것으로, 감축활동의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표 14〉 적응 및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 분담금(SOP)

구분	설명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OMGE)	- 발행된 A6.4ER의 최소 2%를 강제로 취소하여 전지구적 배출량이 실제로 줄어들도록 설계 - 취소된 A6.4ER은 NDC 달성, 국제감축목적, 기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거래되거나 이전 불가 - 국제 탄소시장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로섬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추가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자발적 취소를 통한 추가 기여	- 당사국·활동 참여자·이해관계자 모두가 원할 경우, 이미 상응조정이 이루어진 A6.4ER을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자발적으로 취소 가능 - 각 참여자가 OMGE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택적 수단

Ⅷ.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달성

69.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계산된 A6.4ER의 강제적 취소를 통해 강화된다:

- (a) 매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발행된 A6.4ER 중 최소 2%를 위 V장(제 6조 사항 활동주기)에 따라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계정으로 최초 이전하고 해당 A6.4ER을 취소한다.
- (b) 취소된 A6.4ER은 NDC 달성, 기타 국제감축 목적 또는 다른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이전되지 않는다.
- (c) 남은 A6.4ER 최초 이전 시 유치국은 결정문 2/CMA.3에 따라 해당 수량에 대한 상응조정을 실시한다.

70. 그 밖에, 당사국, 활동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는 결정문 2/CMA.3 III.B장에 따라 상응조정된 A6.4ER에 대해 추가적인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목적으로 메커니즘 등록부 내 자발적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OMGE는 단순히 감축실적을 상응조정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행된 A6.4ER 중 최소 2%를 강제로 취소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로 줄어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사국·참여자·이해관계자가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A6.4ER을 더 취소하여 OMGE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표 15〉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구분	설명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 발행된 A6.4ER의 최소 2%를 강제로 취소하여 전지구적 배출량이 실제로 줄어들도록 설계 - 취소된 A6.4ER은 NDC 달성, 국제감축목적, 기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거래되거나 이전 불가 - 국제 탄소시장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로섬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추가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자발적 취소를 통한 추가 기여	- 당사국·활동 참여자·이해관계자 모두가 원할 경우, 이미 상응조정이 이루어진 A6.4ER을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자발적으로 취소 가능 - 각 참여자가 OMGE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택적 수단

IX. 둘 이상의 당사국에 의한 감축실적 중복사용 방지

71. 유치국이 위 V.C장(승인 및 허가)에 따라 A6.4ER을 NDC 달성 목적으로 허가한 경우, 모든 허가된 A6.4ER의 최초 이전에 대해 결정문 2/CMA.3에 따라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유치국이 제6.4조 감축실적(A6.4ER)을 자국의 NDC 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감축실적이 최초로 이전될 때 반드시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응조정은 감축실적이 둘 이상의 당사국에 중복으로 계산(이중계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회계 규칙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감축량은 유치국과 이전받는 당사국 둘 다에서 중복 인정되지 않아 파리협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결정문 2/CMA.3은 상응조정 관련 세부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X. 기타 국제감축 목적(OIMP)을 위한 감축실적의 사용

72. 유치국이 위 V.C장(승인 및 허가)에 따라 A6.4ER을 기타 국제감축 목적(OIMP)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모든 허가된 A6.4ER의 최초 이전에 대해 결정문 2/CMA.3에 따라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유치국이 A6.4ER을 기타 국제감축 목적(OIMP)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에도 NDC 달성 목적과 동일하게 해당 감축실적이 최초로 이전될 때에 반드시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XI. 청정개발체제(CDM) 활동의 전환 및 탄소배출권(CER)의 최초 NDC 활용

□ CDM 활동의 전환

73. 교토의정서 제12조 하에서 CDM으로 등록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활동, 또는 CDM 집합 이사회의 임시 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등재된 활동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본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어 제6조 4항 활동으로 등록될 수 있다:

(a) CDM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전환 신청이, 해당 CDM 유치국이 승인한 사업 참여자에 의해 사무국 및 결정문 3/CMP.1에 정의된 CDM 유치국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b) CDM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전환에 대한 CDM 유치국의 승인이 감독기구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c) 아래 73(d)항에 따르며, 결정문 2/CMA.3에 따른 상응조정 적용 등 본 규칙·방침 및 절차, 감독기구 채택 요건 및 CMA의 추가 결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d) 활동은 현재 승인된 CDM 방법론을 현재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위 V.B장(방법론)에 따라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74. 감독기구는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신속한 전환 절차를 적용하며, 위 73(b)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요청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 교토의정서 하에서 운영되던 청정개발체제(CDM) 활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국제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토 체제에서 쌓아온 감축 경험과 인프라를 새로운 체계와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표 16〉 CDM 활동의 전환 요건

구분	설명
전환 신청 기한	• CDM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유치국의 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환 신청을 제출
유치국 승인 기한	• CDM 유치국이 전환을 승인한 문서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독기구에 제출
규정 준수	• 전환되는 활동은 파리협정 제6조 관련 규칙(결정문 2/CMA.3)과 상응조정 요건을 포함하여, 모든 새로운 규정과 감독기구 요건을 준수
방법론 적용	• 기존 CDM 방법론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2025년 12월 31일 중 더 빠른 시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6.4조 메커니즘에서 승인된 새로운 방법론을 반드시 적용 필요

또한, 소규모 CDM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활동은 전환 과정에서 신속한 절차가 적용되며, 특히 2025년 말까지 승인된 요청부터 우선 처리됩니다.

☐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권(CER) 활용

75. CDM 하에서 발행된 탄소배출권(CER)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있다:

(a) 해당 CDM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활동이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되었어야 한다.

(b) 해당 CER은 메커니즘 등록부로 이전되어 보유되어야 하며, 2021년 이전 감축실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c) 해당 CER은 최초 NDC 달성에만 사용할 수 있다

(d) 해당 CER에 대해 CDM 유치국은 결정문 2/CMA.3에 따른 상응조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으며, 위 VII장(적응 및 행정비용 부담금)에서 정의된 수익 부담금의 대상도 아니다.

(e) 위 75(a-d)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ER은 CMA의 관련 추가 결정에 따라 NDC 달성에만 사용할 수 있다.

(f) 임시 CER 및 장기 CER은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없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발행된 탄소배출권(CER)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제도에서 창출된 감축 실적을 새로운 체제와 제한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7〉 CER 활용 조건

구분	설명
등록 시기	• 해당 CER은 반드시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CDM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활동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
이전 요건	• 해당 CER은 메커니즘 등록부로 이전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2021년 이전 감축 실적으로 명확히 식별 필요
사용 제한	• 이러한 CER은 최초 NDC 달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된 NDC 달성에는 사용 불가
상응조정 및 수익분담금 예외	• 해당 CER에 대해서는 CDM 유치국이 상응조정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적응기금 분담 등 수익 분담금(SOP)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조건 미충족 CER	• 위 조건(a~d)을 충족하지 못한 CER은 CMA의 추가 결정을 통해, NDC 달성에만 사용 가능
예외 적용 불가 CER	• 임시 CER(tCER) 및 장기 CER(ICER)은 어떠한 경우에도 NDC 달성에 사용 불가

즉, 본 조항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발행된 CER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용을 최초 NDC에 국한하고 엄격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과거 크레딧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제6조 메커니즘의 환경 건전성과 회계적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결정문 3/CMA.3 부속서에서 마련된 제6.4조 메커니즘 규칙·방식·절차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장치입니다. 본 메커니즘은 단순한 크레딧 발행 제도를 넘어, △환경적 무결성 확보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존중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검증 체계 △적응 자원 마련과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기여 등 다양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체제에서 제기되었던 환경건전성 부족, 크레딧의 과잉 공급, 국가 간 불균형적 참여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점이 핵심적입니다. 나아가, 제6.4조 메커니즘은 ITMOs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제도로써, 각국이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감축 노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 7/CMA.4 Annex I 6.4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의 절차 구체화

결정문 7/CMA.4 부속서 I 은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규칙·방식·절차(RMPs)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부속서는 CDM 활동의 제6.4조 메커니즘 전환, 탄소배출권(CER)의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활용, 유치국의 보고 의무,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행정비용 및 적응 자원 확보 절차, 그리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실현 절차 등 주요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CDM 활동의 전환 절차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방법론 적용, 전환 요청·승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과거 제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ER 활용 규정은 최초 NDC에 한정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과거 크레딧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면서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및 거래 절차, 허가·승인 체계, 행정비용 및 적응 자원 분담금 부과, OMGE를 위한 의무적·자발적 취소 절차 등은 제6.4조 메커니즘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1. CDM 활동의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으로의 전환 이행 절차

□ 인증 유효기간

1. 파리협정 제6조 4항에 따라 설립된 메커니즘 규칙·방식·절차(RMPs) 73항에 따라, CDM 등록 프로젝트 활동은 RMPs 73항에 명시된 조건과 아래 1.B장의 활동 설계 요건을 충족하고,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종료 후에도 CDM 하에서 크레딧 발행이 이어졌다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했을 인증 유효기간일 경우, 파리협정 제6조 4항 메커니즘(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CDM 프로젝트 활동의 인증 유효기간 유형(갱신형 또는 고정형)과 남은 갱신 횟수(갱신형인 경우)는 전환 시점 또는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
3.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CDM 프로젝트 활동의 현재 인증 유효기간은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종료된다:
 - (a)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이후에도 CDM에서 크레딧 발행이 계속될 경우 현재 인증 유효기간의 종료시점
 - (b) 인증 유효기간이 갱신형일 경우 2025년 12월 31일
 - (c) RMPs 27(b)항에 따라 각 유치국이 인증 유효기간 조건에 명시할 수 있는 날짜
4. 갱신형 인증 유효기간을 가진 CDM 프로젝트 활동은 제6.4조 메커니즘에 하에서 한 번 갱신되면, 남은 각 기간의 길이는 제6.4조 메커니즘의 관련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
5. 위 1~4항의 원칙은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CDM 프로그램 활동(PoA) 및 그에 포함된 구성 프로젝트 활동(CPA)의 기간 및 인증 유효기간에도 각각 적용된다.

CDM 활동의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전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우선,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CDM 하에서 크레딧 발행이 이루어졌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했을 인증 유효기간을 가진 경우에 한해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전환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CDM 프로젝트의 인증 유효기간 유형(갱신형·고정형)과 남은 갱신 횟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되는 프로젝트의 현재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CDM 하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갱신형의 경우), △각 유치국이 별도로 명시한 날짜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종료되도록 규정됩니다. 이는 제6.4조 메커니즘 체계로의 원활한 전환과 동시에 과거 CDM 제도의 잔여분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갱신형 인증 유효기간을 가진 CDM 활동은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된 이후 한 번 갱신될 수 있으며, 이후 갱신 주기는 반드시 제6.4조 메커니즘의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프로젝트 단위뿐만 아니라 CDM 프로그램 활동(PoA)과 그 하위 구성 프로젝트 활동(CPA)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활동 설계

6.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CDM 등록 프로젝트 및 PoA, CPA, 그리고 제108차 CDM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임시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등록·갱신·발행 요청된 활동 중, 제 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활동은 해당 유치국이 RMPs 26(e)항에 따라 지정한 활동 유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7. RMPs 73(c)항에 따라, 전환 활동은 감독기구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RMPs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8. 전환 활동에 적용되는 CDM 방법론은 RMPs 73(d)항의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국이 RMPs 27(a)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방법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체되어야 한다.
9.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 방법론이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환 활동은 RMPs 73(d)항에 따라 감독기구에서 마련하는 임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전환 활동은 CMA의 관련 결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 4항 활동(제6.4조 활동) 하의 모든 활동과 동일한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을 적용해야 한다.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CDM 활동은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만으로 자동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요건과 감독기구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전환 활동은 유치국이 RMPs 26(e)항에 따라 지정한 활동 유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별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 안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RMPs 73(c)항에 따라 전환 활동이 제6.4조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RMPs)를 준수한다는 점을 감독기구 지침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전환 활동에 기존 CDM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RMPs 73(d)항의 조건과 유치국이 RMPs 27(a)항에 따라 정한 방법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대체 방법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활동의 경우,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 방법론이 없다면 감독기구가 마련한 임시 대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축실적 산정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환 활동은 CMA의 결정에 따라 제6.4조 메커니즘 모든 활동과 동일한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환 절차

11. RMPs 73(a)항에 따라, CDM 유치국의 승인을 받은 CDM 등록 프로젝트 활동의 참여자 또는 CDM PoA의 조정/관리 기관, 또는 그 대리 기관은 해당 활동을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RMPs 26(c)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CDM 유치국의 제6.4조 메커니즘을 위한 국가승인기구(DNA)와 사무국에 전환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일 당사국의 CDM DNA에도 2023년 31일까지 감독기구가 마련할 절차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
12. RMPs 73(b)항에 따라, CDM 유치국의 제6.4조 메커니즘 DNA가 전환을 승인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독기구가 마련할 절차에 따라 그 승인을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13. 임시조치 하 잠정 요청에 대한 전환 요청 및 유치국 승인, 기타 참여 당사국의 활동 참여자 승인 요청은 해당되는 경우 위 11~1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하 갱신·발행 잠정 요청의 전환 요청은 해당 CDM 활동이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이후에만 처리된다.
14. 사무국에 제출된 CDM 활동 전환 요청 및 임시조치 잠정 요청에는 제6.4조 메커니즘에 적용되는 행정비용 분담금 및/또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한 수익 분담금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a) CDM 활동 전환 요청은 제6.4조 메커니즘의 등록 요청에 적용되는 분담금 적용 대상이다.
 - (b) 임시조치 하 등록에 대한 잠정 요청은 제6.4조 메커니즘 하의 등록 요청에 적용되는 분담금 적용 대상이다.
 - (c) 임시조치 하 CPA의 잠정 포함은 제6.4조 메커니즘 하에 등록된 PoA에 CPA를 포함할 때 적용되는 분담금 적용 대상이다.
 - (d) 임시조치 하 갱신에 대한 잠정 요청은 제6.4조 메커니즘 하의 갱신 요청에 적용되는 분담금 적용 대상이다.
 - (e) 임시조치 하 발행에 대한 잠정 요청은 제6.4조 메커니즘 하의 발행 요청에 적용되는 분담금 적용 대상이다.
15. 감독기구가 승인한 CDM 활동의 전환 요청 및 임시조치 하 잠정 요청의 경우, 전환의 효력 발생일을 승인일과 무관하게 이르면 2021년 1월 1일로 간주할 수 있다.
16. 감독기구에 의해 전환이 승인되면, 해당 활동 및 요청은 이후 모든 메커니즘 활동주기 단계에서 위 8~9항에서 기술한 RMPs 27(a)항 및 73(d)에서 규정된 방법론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제6.4조 메커니즘의 모든 관련 요건을 적용받는다.

17. 감독기구는 CDM 활동의 전환을 수행하며, 이러한 CDM 활동은 결정문 2/CMP.16 12항에 따라 전환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CDM 등록이 해제됨을 명시해야 한다.

CDM 활동의 제6.4조 메커니즘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치국 승인·사무국 통보·감독기구 승인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CDM 등록 프로젝트 활동의 참여자나 CDM 프로그램 활동(PoA)의 조정·관리 기관은, 유치국의 승인을 받아 제6.4조 메커니즘 국가승인기구(DNA) 및 사무국에 전환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CDM 유치국의 기존 DNA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독기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이어서, 유치국이 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독기구에 해당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하에서 제출된 잠정 요청(등록·갱신·발행 요청 등)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갱신 및 발행과 관련된 잠정 요청은 해당 활동이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이후에만 처리됩니다.

전환 요청 및 임시조치 요청에는 행정비용 부담금 및 적응기금 지원을 위한 수익 부담금(SOP)이 적용되며, 이는 요청의 성격에 따라 등록·갱신·발행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즉, CDM 전환 활동은 새로운 제6.4조 메커니즘 참여 활동과 동일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승인된 전환 활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후 모든 활동주기 단계에서 제6.4조 메커니즘의 관련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는 RMPs 27(a)항과 73(d)항에서 규정된 방법론 요건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구가 전환을 승인한 활동은 자동으로 CDM 등록이 해제되며, 파리협정 체계 하의 제6.4조 메커니즘 활동으로 공식 전환됩니다.

II.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국가결정기여에 대한 탄소배출권 사용 이행 절차

□ CDM 등록부에서 탄소배출권(CER)의 이전

18. 규칙·방식·절차(RMPs) 75항에 따라 이전이 허용된 탄소배출권(이전 가능한 CER)의 이전은 프로젝트 참여자 혹은 CDM 등록부에 이전 가능한 CER을 보유한 당사국, 또는 적응기금의 수탁자가 결정문 2/CMP.17의 방침에 따라 이전을 시작한 경우, 해당 결정문 방침 및 교토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기타 관련 지침에 따라 CDM 등록부 관리자가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에 통지해야 한다. 이전 데이터에는 해당 CER의 전체 일련번호 및 수신 계정 식별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이전 데이터는 양 등록부(사무국)의 관리자에 의해 마련되고 실행될 조정 절차 대상이 된다.

19.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CDM 등록부로부터 받은 이전 데이터를 확인하고, CDM 등록부 관리자로부터 통지받은 대로 수신 계정에 CER을 기록해야 한다. 메커니즘 등록부는 감독기구에서 마련할 단위(unit) 일련번호 부여 규정에 따라 수령한 CER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며, RMPs 75(b)항에 따라 2021년 이전 감축실적으로 간주하며, 이를 추적, 표시 및 보고해야 한다. 또한 메커니즘 등록부는 기존 교토의정서 일련번호도 추적해야 한다.
20. 메커니즘 등록부는 CMA가 정하는 날짜까지 CDM 등록부로부터 CER의 이전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21. CER 거래는 아래 IV장(메커니즘 등록부 운영)에 따른 방침에 따라야 한다.

CER의 이전 절차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발행된 CER을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이관하여,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RMPs 75항에 따라 이전이 허용된 CER은 프로젝트 참여자, 해당 CER을 보유한 당사국, 또는 적응기금 수탁자가 결정문 2/CMP.17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이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DM 등록부 관리자는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에는 CER의 전체 일련번호와 수신 계정의 식별값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 데이터는 두 등록부 관리자(사무국)에 의해 마련된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CDM 등록부로부터 받은 이전 데이터를 확인하고, 통지받은 대로 수신 계정에 해당 CER을 기록합니다. 이때 메커니즘 등록부는 감독기구가 마련한 단위(unit) 일련번호 규정에 따라 CER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며, 이를 2021년 이전 감축실적으로 간주하여 추적·표시·보고합니다. 아울러, 기존 교토의정서 일련번호도 병행하여 추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ER 이전은 CMA가 정하는 기한까지 CDM 등록부에서 메커니즘 등록부로 계속 수령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ER 거래는 제6.4조 메커니즘의 등록부 운영 규정(IV장)에 따라야 하며,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구가 마련하는 관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권(CER) 사용

22. 당사국은 CMA가 채택할 방침 및/또는 감독기구가 마련할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로 이전된 CER을 퇴역(retire)하여 자국의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있다.
23. CER을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에 사용하는 당사국은 결정문 2/CMA.3 부속서 7~8항에 따라 배출균형 산정 시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퇴역된 CER 수량을 공제하여 NDC 달성에 사용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물(ITMO) 관련 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이때 유치국은 RMPs 75(d)항에 따라 상응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24.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을 위해 CER을 사용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 (a) NDC 이행기간의 각 연도별로 결정문 5/CMA.3 부속서 II의 표4 내 “제6조에 따른 보고에 관해 CMA가 채택한 결정과 일치하는 기타 정보(MPGs 77(d)(iii)항)” 행에 해당 연도의 CER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 (b) 위 23항에 따라 결정된 공제량을, 결정문 5/CMA.3 부속서 II 표4의 “결정문 2/CMA.3 부속서 23(k)(i)항에 언급된 배출균형 산정에 적용된 총 정량적 상응조정량(결정문 2/CMA.3 부속서 III.B장-상응조정 적용방법 및 23(g)항 기반)” 행에 포함해야 한다.

당사국은 CMA가 채택하는 방침 및 감독기구가 마련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로 이전된 CER을 퇴역(retire) 처리하여 자국의 최초 또는 최초 갱신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ER을 NDC 달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결정문 2/CMA.3 부속서 7~8항에 따라 배출균형 산정 시 퇴역된 CER 수량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ITMO 관련 지침을 동일하게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유치국은 RMPs 75(d)항에 따라 상응조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즉, CDM에서 발행된 CER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상응조정의 부담을 유치국이 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CER을 NDC 달성에 사용하는 당사국은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NDC 이행 기간의 각 연도별로, 결정문 5/CMA.3 부속서 II의 표 4에서 ‘제6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한 기타 정보(MPGs 77(d)(iii)항)’ 항목에 해당 연도의 CER 사용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23항에서 규정된 공제량은 같은 표 4 내 결정문 2/CMA.3 부속서 23(k)(i)항에 언급된 배출균형 산정에 적용된 총 정량적 상응조정량 행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합니다.

III. 유치국의 제6.4조 활동 및 해당 활동에 발행된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

25. 유치국은 감독기구가 지정할 방침에 따라 RMPs 26~28항에 명시된 유치국의 참여 책임 관련 정보를 감독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감독기구는 수령한 정보를 UNFCCC 웹사이트에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 (a) RMPs 26(a)항에서 언급된 파리협정 당사국 지위 정보는, 해당 당사국이 파리협정 제20조에 따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서류를 기탁자에 제출한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 (b) RMPs 26(b), 28(a)항에서 언급된 NDC의 준비, 통보 및 유지에 관한 정보는, 파리협정 제4조 2항에 따라 사무국에 통보되고 여전히 유효한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26. RMPs 40, 41, 45항에 따라 유치국 및 기타 참여 당사국은 감독기구가 지정할 방침에 따라 각각 유치국의 활동 승인, 유치국에 의한 활동 참여자 허가, 기타 참여 당사국에 의한 활동 참여자 허가 관련 정보를 감독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25~26항은 제6.4조 활동과 관련하여 유치국과 참여 당사국이 감독기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참여 책임 정보의 범위와 공개 절차를 규정합니다. 유치국은 제6.4조 활동 수행과 관련한 참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감독기구에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감독기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 정보를 UNFCCC 공식 웹사이트에 신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당사국 지위 정보는 UNFCCC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준·가입 상태에 기반해 제공되고, NDC 관련 정보 역시 파리협정 4조 2항에 따라 사무국에 통보된 내용이 유효한 상태일 때 이를 인정합니다.

유치국뿐 아니라 기타 참여 당사국도 활동 승인 및 참여자 허가에 관한 정보를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감독기구가 메커니즘 운영을 감독·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보 제공은 투명한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로 기능합니다.

IV.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 형식 및 기능

27. RMPs 64~65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성되며, RMPs 75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로 이전된 제6조 4항 감축실적(A6.4ERs) 및 CDM 탄소배출권(CERs)을 추적해야 한다.
 - (b) 파리협정 제6조 2항 협력적 접근법과 CMA의 추가 결정에 포함된 등록부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 (c) 사무국이 주최하고 유지해야 한다.
28. 메커니즘 등록부는 RMPs 75항에 따라 이전된 A6.4ER 및 CER을 단위(unit)로 추적하며, 각 단위는 불가분이며 메커니즘 등록부 거래는 반드시 전체 단위로만 가능하다.
29. 메커니즘 등록부는 다음을 추적해야 한다:
- (a) RMPs 42항에 따라 NDC 달성 및/또는 기타 국제감축 목적 사용 허가를 받은 A6.4ER (허가된 A6.4ERs)

- (b) NDC 달성 및/또는 기타 국제감축 목적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A6.4ER(감축기여 A6.4ERs)는 성과기반 기후 자원, 국내 감축 가격제도, 국내 가격 기반 정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치국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0.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추적되는 모든 A6.4ER 및 CER은 감독기구가 마련할 방침에 따라, 그리고 파리협정 제6조 2항 협력적 접근법 관련 CMA가 채택한 지침에 일관되게 고유 식별자가 부여되어야 한다.
31. 각 A6.4ER 또는 CER은 한 번에 하나의 계정에만 보관되어야 한다.
32. RMP 63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는 최소한 다음의 계정 유형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감독기구가 채택할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개설된다:
- (a) 모든 A6.4ER이 발행되는 잠정계정
 - (b)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추적되는 A6.4ER 또는 CER을 취득할 수 있는 보유 계정
 - (c) RMP 58항에 따라 A6.4ER을 수령하는 적응기금 수익 분담금 계정
 - (d) RMP 59항에 따른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한 A6.4ER 의무 취소 계정(OMGE 의무 취소 계정)
 - (e) RMP 70항에 따른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한 A6.4ER 자발적 취소 계정(OMGE 자발적 취소 계정)
 - (f) A6.4ER 및 CER 소멸 계정
 - (g) 기타 국제감축 목적을 위한 A6.4ER 취소 계정
 - (h) 기타 목적을 위한 A6.4ER 자발적 취소 계정
 - (i) 시정 조치 등 필요한 경우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추적되는 A6.4ER 및 CER의 행정적 취소 계정
33. RMP 63항에 따라, 참여 당사국에 의해 활동 참여자로 허가된 당사국 및 기관은 감독기구가 채택할 요건과 절차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 내 보유계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계정 개설은 참여 허가를 한 참여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계정은 허가한 당사국과 연결된다.
34. RMPs 55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는 계정 보유자가 보유계정 내 A6.4ER 허가 상태와 최초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록부는 계정 거래 이력 내 해당 거래가 최초 이전인지 여부도 계정 보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커니즘 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의 핵심 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A6.4ER과 CDM에서 이전된 CER을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추적·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등록부는 UNFCCC 사무국이 주관하고 유지하며, 제6조 2항 협력적 접근법 지침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부에서 거래되는 A6.4ER과 CER은 단위(unit)로 관리되며, 반드시 전체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단위에는 고유 식별자가 부여되어야 하고, 한 번에 오직 하나의 계정에만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 실적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등록부는 허가된 감축실적과 허가되지 않은 감축실적을 구분하여 추적해야 합니다. 즉, NDC 달성이나 기타 국제감축 목적 사용이 허가된 A6.4ER은 별도로 관리되며, 허가되지 않은 A6.4ER은 성과기반 기후 자원, 국내 감축정책, 가격 기반 제도 등 유치국 내 배출 감축 기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부에는 잠정계정, 보유계정, 적응기금 수익 분담금 계정 OMGE를 위한 의무 취소 계정과 자발적 취소 계정, 소멸 계정, 기타 국제감축 목적 및 기타 자발적 취소 계정, 행정적 취소 계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 당사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감독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유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정은 허가한 당사국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부는 계정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A6.4ER의 허가 여부와 최초 이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최초 이전인지 여부를 추적할 수 있으며, 감축실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절차

35. 메커니즘 등록부는 RMP 75항에 따라 이전된 A6.4ER 또는 (해당되는 경우) CER의 발행, 전달, 최초 이전, 이전, 취소, 자발적 취소 및 퇴역을 수행해야 한다.
36. 결정문 2/CMA.3 부속서 2항 및 CMA의 관련 결정에 따른 최초 이전 정의에 부합하는 거래는 메커니즘 등록부 내에서 최초 이전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7. RMP 54항에 따라, 감독기구의 지시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모든 허가된 A6.4ER 및 감축기여 A6.4ER을 잠정계정에 발행해야 한다.
38. RMP 55항에 따라, A6.4ER 발행 시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RMP 42항에 따라 유치국이 감독기구에 제공한 성명서에 근거하여 허가 상태를 부여해야 한다.
39. RMP 58항에 따라, 등록부 관리자는 잠정계정에 있는 발행된 허가 A6.4ER 및 감축기여 A6.4ER의 5%를 즉시 적응기금의 적응 수익 분담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허가된 A6.4ER의 경우 해당 이전을 최초 이전으로 구분하고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40. RMP 59항 및 69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잠정계정에 있는 발행된 허가 A6.4ER 및 감축기여 A6.4ER 중 최소 2%를 즉시 OMGE 의무 취소 계정으로 즉시 취소해야 하며, 허가된 A6.4ER의 경우 해당 취소를 최초 이전으로 구분하고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41. RMP 60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는 활동 참여자의 지시에 따라 남은 A6.4ER을 활동 참여자 및 참여 당사국의 보유계정으로 전달하거나 최초 이전을 수행해야 한다.
42. 계정 보유자는 감독기구가 채택할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보유계정 내 A6.4ER 또는 CER의 이전, 취소 또는 자발적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43. 계정 보유자는 감독기구가 채택할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 내 보유계정에서 A6.4ER 또는 CER을 취득할 수 있다.

44. 각 참여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퇴역계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퇴역계정은 해당 계정을 개설한 참여 당사국과 연계된 계정에서만 NDC 달성용으로 허가된 A6.4ER 또는 CER을 취득할 수 있다.
45. 취소계정 또는 소각계정으로 이전된 A6.4ER 또는 CER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이전될 수 없다.

발행, 전달, 최초 이전, 일반 이전, 취소, 자발적 취소 및 소각 등 A6.4ER과 CER의 모든 거래는 규칙·방식·절차(RMP) 75항 및 CMA 관련 결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발행된 모든 A6.4ER은 감독기구의 지시에 따라 잠정계정에 기록되며, 발행 시 유치국이 감독기구에 제출한 성명서를 근거로 하여 허가 여부가 지정됩니다. 발행 직후, 전체 발행량의 5%는 적응기금 계정으로 자동 이전되며, 최소 2%는 OMGE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허가된 A6.4ER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최초 이전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상응조정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남은 A6.4ER은 활동 참여자의 지시에 따라 당사국 또는 기관의 보유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계정 보유자는 감독기구가 마련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A6.4ER 또는 CER을 이전, 취소, 자발적 취소할 수 있으며, 다른 계정에서 신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소각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정은 해당 당사국이 NDC 달성을 위해 허가한 A6.4ER 및 CER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계정이나 소각 계정으로 이전된 실적은 다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없으며,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이 종료됩니다.

□ 정보

46. 메커니즘 등록부는 각 참여 당사국에 대해, 허가된 A6.4ER과 관련하여 결정문 2/CMA.3 부속서 IV장(보고)의 합의된 전자양식(AEF) 및 기타 정량적 정보 요구사항의 자동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등록부 계정 내 ITMO 기록 생성
47. 메커니즘 등록부는 제6조 4항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DNA에 각 당사국 관련 계정의 보유 내역 및 거래 이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48. 메커니즘 등록부는 기밀이 아닌 정보를 공개하며,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메커니즘 등록부는 각 참여 당사국의 보고와 투명성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보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등록부는 결정문 2/CMA.3 부속서 IV장(보고)에 규정된 AEF를 통해, 각국이 허가한 A6.4ER과 관련된 정량적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등록부 계정 내 ITMO 기록이 생성되며, 국가 간 거래 및 사용이 보다 명확하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커니즘 등록부는 제6.4조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각국의 DNA에 대해, 해당 당사국 관련 계정의 보유 내역과 거래 이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국은 자국 활동 및 국제 거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는 기밀이 아닌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 등록부와의 연결

49. RMP 63항에 따라, 메커니즘 등록부는 국제등록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연결은 국제 등록부에 계정을 보유한 참여 당사국이 허가된 A6.4ER의 보유 내역 및 거래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커니즘 등록부는 파리협정 6조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등록부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국제 등록부에 계정을 보유한 각 참여 당사국은 허가된 A6.4ER의 보유 현황과 거래 이력을 국제 등록부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오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 등록부와 국제 등록부 간의 데이터 불일치나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국가 간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V.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 분담금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한 수익 분담금 이행에 필요한 절차

□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 분담금

50. 행정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분담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제6.4조 활동 등록 요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등록 수수료)
- (b) 등록된 PoA에 CPA 포함 시 부과되는 수수료(포함 수수료)
- (c) 등록된 제6.4조 활동에 대해 A6.4ER 발행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발행 수수료)
- (d) 제6.4조에 따라 등록된 프로젝트 활동 및 PoA의 인증 유효기간 또는 PoA 기간 갱신 요청 시, 또는 등록된 PoA에 포함된 CPA의 갱신 요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갱신 수수료)
- (e) 등록된 제6.4조 활동에 대한 사후 변경 승인 요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사후 변경 수수료)

51. 등록 수수료는 독립형 활동의 경우 다단계 고정 비율로 설정되며, 이는 갱신현의 경우 최초 인증유효기간동안 추정되는 연평균 감축량 또는 제거량을 기준으로, 고정형의 경우 전체 인증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PoA의 경우 고정 비율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이 수수료는 아래 53항의 발행 수수료에 대한 선납금이 아니라, 신청 처리에 전액 소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연평균 감축량 또는 제거량이 최초 인증유효기간 기준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₂eq) 이하인 활동은 최대 2,000 달러
- (b) 연평균 감축량 또는 제거량이 15,001~50,000 tCO₂eq인 활동은 최대 6,000 달러
- (c) 연평균 감축량 또는 제거량이 50,000 tCO₂eq 초과 또는 PoA는 최대 12,000 달러

52. 포함 수수료는 건당 최대 1,000 달러로 한다.
53. 발행 수수료는 요청된 A6.4ER 발행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단위당 최대 0.20 달러로 설정된다.
54. 갱신 수수료는 해당 활동의 감축 또는 제거 규모에 따른 등록 수수료 또는 해당 시 포함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5. 사후 변경 수수료는 요청당 최대 2,000 달러의 고정 요율로 한다. 만약 변경으로 인해 해당 활동의 규모가 더 높은 구간으로 변경된다면, 이미 납부한 등록 수수료와 신규 구간 차액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6. 위 50~55항에 언급된 모든 수수료는 신청 제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 후에만 신청이 처리된다.
57. 지급된 수수료는 감독기구가 정하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불될 수 있다.
58. 위의 50~55항에 언급된 모든 수수료는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발국의 활동에 대해서 전액 면제된다.
59. 감독기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 활동 참여자의 공정성, 행정 효율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의 원칙 아래 CMA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구조 및 수준을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분담금은 여러 유형의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수수료 △포함 수수료 △발행 수수료 △갱신 수수료 △사후 변경 수수료가 있습니다.

먼저 등록 수수료는 활동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독립형 활동의 경우 연평균 감축량 또는 제거량을 기준으로 다단계 고정 요율이 적용되며, PoA는 고정 요율로 적용됩니다. 규모별 최대 부과 금액은 △15,000 tCO₂eq 이하일 경우 2,000달러 △15,001~50,000 tCO₂eq일 경우 6,000달러 △50,000 tCO₂eq 초과 또는 PoA는 12,000달러로 설정됩니다.

포함 수수료는 PoA에 CPA를 추가할 때 건당 최대 1,000달러로 부과되며, 발행 수수료는 요청된 A6.4ER 발행량에 비례하여 단위당 최대 0.20달러가 부과됩니다. 갱신 수수료는 최초 등록 시 납부한 등록 수수료 또는 포함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사후 변경 수수료는 요청당 최대 2,000달러이며, 만약 변경으로 인해 활동 규모가 상향 구간으로 조정되면 기존 등록 수수료와의 차액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신청 제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신청이 처리됩니다. 지급된 수수료는 감독기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발국의 활동은 모든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 장기적 운영 안정성, 활동 참여자의 공정성, 행정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CMA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구조와 수준을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응을 위한 수익 분담금

60. 적응기금 이사회 및 그 지원 조직은 메커니즘 등록부에 있는 적응기금의 적응 수익 배분 계정에 보유된 A6.4ER의 현금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현금화 현황을 매년 CMA에 보고해야 한다.
61. RMP 67(b)항에 따라, 사무국은 감독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6.4조 활동의 현금 기여분을 매년 적응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62. RMP 67(b)항에 따라, 감독기구는 위 50~55항에서 언급된 수수료 수입과 제6.4조 메커니즘 운영비 지출에 따른 잔여 자금의 상태를 매년 검토하고, 향후 3년 이상의 운영비를 예비비로 남긴 뒤 잉여금 예상치를 근거로 적응기금에 이체할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매년 CMA에 이체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적응기금 이사회 및 그 지원 조직은 메커니즘 등록부 내 적응기금 계정에 보유된 A6.4ER을 현금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화 진행 상황은 매년 CMA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감독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6.4조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기여분을 매년 적응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기구는 제6.4조 활동 관련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 지출을 매년 검토하여, 향후 최소 3년간의 운영비를 예비분으로 확보한 뒤, 남은 잉여 자금을 적응기금으로 이체할 시기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행된 후 매년 CMA에 보고됩니다.

VI.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 실현을 위한 필수 절차

63. RMP 59항에 따라 OMGE 실현을 위한 A6.4ER의 의무적 취소는 위 IV.B장(거래 절차)에 따라 적용된다.
64. RMP 69(a)항에 따라, 활동 참여자는 감독기구가 마련할 절차에 따라 A6.4ER 발행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발행량의 최소 2% 의무적 취소에 더해 추가적인 OMGE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65. RMP 70항에 따라, 당사국, 활동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는 감독기구가 마련할 절차에 따라 결정문 2/CMA.3 부속서 III.B장(상응조정 적용)에 따라 상응조정이 이루어진 A6.4ER의 추가 OMGE 실현을 위한 자발적 취소를 메커니즘 등록부에서 요청할 수 있다.
66. OMGE를 위한 의무적 및 자발적 취소에 대한 정보의 공개, 결정문 2/CMA.3 부속서에서 언급된 제6조 데이터베이스 및 메커니즘 등록부와와의 연계 및 정보 교환은 각각 해당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의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67. 감독기구는 CMA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OMGE를 위해 취소된 누적량 및 관련 정성적 정보를 OMGE 의무적 취소와 자발적 취소를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RMP 59항에 따라, A6.4ER의 의무적 취소는 IV.B장(거래 절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발행 시점에서 최소 비율의 크레딧을 강제로 취소하여 전지구적 순감축 효과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활동 참여자는 감독기구가 마련할 절차에 따라, A6.4ER 발행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의무적 취소 비율(2%)에 추가하여 더 많은 물량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 수준을 넘어선 추가적 기여가 가능합니다.

당사국, 활동 참여자, 이해관계자 역시 감독기구 절차에 따라, 상응조정이 이루어진 A6.4ER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문 2/CMA.3 부속서 III.B장에 따른 규정을 근거로 하며, 국가 차원의 기여뿐만 아니라 민간 이해관계자 참여도 허용됩니다.

또한, OMGE를 위한 의무적·자발적 취소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제6조 데이터베이스 및 메커니즘 등록부와 연계되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각각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등록부의 형식과 절차를 따릅니다. 감독기구는 CMA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OMGE 취소 현황을 누적량과 정성적 정보로 보고해야 하며, 이때 의무적 취소와 자발적 취소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결정문 7/CMA.4 Annex I 은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의 절차적 기반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실행 지침으로 작동합니다. CDM 전환, CER 사용, 등록부 운영, 재정 및 감축 신뢰성 확보 절차는 모두 상호 연계되어, 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감축사업 참여자를 위한 파리협정 6조 해설 및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발 행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 행 일 2026년 1월

본 간행물에 수록된 내용의 저작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합니다.

본 자료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2026. MCEE, SLC, All rights reserved.